연구보고서 2007-12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硏 究 陣≫

연 구 위 원 : 구 현 아 (포항1대학 교수)

연 구 자 문 : 이 웅 혁 (경찰대학교 교수

목 차

Ⅰ. 서 론 ····· 7

1. 연구배경 ····· 7
2. 연구목적 ····· 9

Ⅱ. 선행연구의 검토 ····· 11

1. 노인범죄의 발생추이 ····· 11
2. 노인범죄 발생원인 ····· 12
3. 노인범죄의 상관요인 ····· 14
4. 범죄와 연령간의 관계 ····· 23

Ⅲ. 연구의 방법 ····· 28

1. 노인의 정의 ····· 28
2. 사례연구 ····· 31
3. 데이터 출처 ····· 32

Ⅳ.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범죄: 연령과 범죄 ····· 33

1. 고령화 사회 ····· 33
2. 노인범죄 현황 ····· 36
3. 연령과 나이의 관계 ····· 40

Ⅴ. 노인범죄의 특성 ····· 47

1. 일반적 노인범죄의 특성 ····· 47

2. 만성적 노인범죄의 특성 ····· 70

Ⅵ.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 82

1. 생계형 노인범죄의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 82
2.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 92
3.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95

Ⅶ. 결　어 ····· 100

참고문헌 ····· 105

< 그림 차례 >

<그림 Ⅳ-1>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 ····· 34
<그림 Ⅳ-2>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 ····· 35
<그림 Ⅳ-3> 유년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추이 ····· 35
<그림 Ⅳ-4> 노인범죄 죄종별 증가추이 ····· 39
<그림 Ⅳ-5> 노인범죄 죄종별 추이(강도) ····· 39
<그림 Ⅳ-6> 노인범죄 죄종별 추이(마약) ····· 40
<그림 Ⅳ-7> 노인범죄의 연령대별 증감추이 ····· 44
<그림 Ⅳ-8> 미국의 범죄발생과 연령의 비율 ····· 44
<그림 Ⅳ-9> 한국의 연령과 범죄자수의 비율 ····· 45
<그림 Ⅳ-10> 연령에 따른 국내 범죄 발생율 ····· 46
<그림 Ⅴ-1> 강간범죄의 재범율 ····· 65

< 표 차례 >

<표 Ⅲ-1> 공식자료에 정의된 노인범죄의 죄형분류 ····· 32
<표 Ⅳ-1> 최근 10년간 주요 범죄 대비 61세 이상 노인범죄자 비율 ····· 37
<표 Ⅳ-2>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범죄인원 및 비율 ····· 41
<표 Ⅴ-1> 범죄심도의 4단계 ····· 72
<표 Ⅵ-1>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 86
<표 Ⅵ-2>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 91

Ⅰ. 서 론

1. 연구배경

UN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1]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가,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간은 19년에 불과하여,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일본의 24년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편이다[2].

이처럼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의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 개인은 산업화, 핵가족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에 따르는 사회비용의 증가를 부담하게 되는 등 노인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감 및 자기 존중감 상실을 겪고 있는 노인,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반자나 배우자와 이별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부양, 보건의료, 복지, 가족관계 등 노인을 둘러싼 여러 분야의 문제가 그만큼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

1) 통계청 : http://www.nso.go.kr/nso2006/main/index.htmldex.html

(단위: 천명 : %)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	2026년	2030년	2050년
총인구	47,008	48,294	49,220	49,934	49,771	49,329	42,348
65세이상인구	3,395	4,383	5,354	7,162	10,357	11,899	15,793
65세이상구성비	7.2	9.1	10.9	14.3	20.8	24.1	37.3

2) 실제로 재정경제부(1999)에 따르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이행할 나라로 예측되고 있다.

음을 나타낸다.[3)]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노인관련 문제에 관해 노령화에 의한 인구구조학적 측면, 노인의 역할 부재와 심리적 고독, 사회 적응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노인들이 야기하는 사회병리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4)]

더욱이 범죄학적 측면에서 노인이 범한 범죄를 다룬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관심부족이 부족하였고, 규모가 크지 않고 강력범죄의 비중이 적다는 실질적인 이유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한편, 범죄와 노인과의 관계에 주목한 일부 범죄학자들이 있으나, 이들 기존 연구들은 노인의 범죄 가해가 아닌 피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행위의 주체이기보다는 범죄의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이 범한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한편, 전반적인 노인범죄자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미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5)] 2005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10%를 넘어서고, 각종 범죄로 체포된 일본 노인들이 4만2천108명으로 전체 범죄의 10.9%를 차지했다고 일본 경찰청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범은 10만명 당 165명꼴로 지난 1989년 10만명 당 46명에 비하면 4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노인범죄 증가추이는 조만간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들 노인범죄자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과 동시에, 노인이 범한 범죄 및 노인범죄자 집단에 대한 관심과 대책 또한 요구될 것이다.

---

3)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제11집: p. 1-3.
4) 이건종・전영실(1995),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3.
5) 일본 노인 인구는 최근 수년간 급증했으며 2005년 11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일본 전체 인구 약 1억2천700만명 중 20.7%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일본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이며, 2040년까지는 33%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다.

2. 연구목적

이에 최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노인범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노인에 의한 범죄의 실태파악(남상철・신연희, 2004; 지광준, 2002; 오홍수, 2002; 이영남, 2001; 김승용, 2000; 이건종・전영실, 1995), 노인범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접근(이현희・원영희・구자숙, 2003; 김인숙, 1998), 그리고 노인수용자 처우(남상철・신연희, 2003; 강은영, 2001; 남상철, 1999)에 이르기까지 점차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범죄자와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노인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 각각의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범행 유형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등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연령과 범죄와의 일반적 관계 및 노인범죄자의 특정 프로파일(profile)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연관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노인범죄자와 평생을 범죄자의 길을 걸어온 직업 노인범죄자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외관상 노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라 할지라도 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죄자의 고령화가 특성이라면, 후자는 이른바 만성적 범죄인으로서의 노인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프로파일링하는 것은 노인에 의한 신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전략 수립 및 범인 검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신종범죄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으로서 이른바 '노인지향경찰활동'(EOP: Elderly Oriented Policing)을 경찰이 주도하는 범죄예방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범죄라는 세계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의 수동적, 반응적 대처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노인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연령과 범죄는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최근 발생하는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국내의 만성적 직

업노인 범죄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범죄에 대한 특성 및 이에 근거한 향후 경찰대책과 보다 심도 있는 노인범죄 연구를 위한 탐색적이고 기초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노인범죄의 발생추이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노인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6]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노인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는 노인범죄의 연도별 증감을 살펴보는 추이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노인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이나 사법절차에 관한 연구와 노인범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노인범죄의 연도별 증감 변화를 분석한 미국의 연구들은 공식 범죄통계인 FBI의 UCR(Uniform Crime Reports)를 이용하여 대체로 노인범죄의 추이에 관해 몇 가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난 20~30년 동안 노인범죄는 크게 늘어났으며, 증가 속도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절도, 자동차 절도 등의 주요 형법범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반해 알코올 중독이나 부랑자 등의 사소한 무질서 범죄는 감소하였다.[7]

둘째, 노인층이 저지르는 범죄는 젊은 층의 범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Wilbanks와 Murphy(1984)는 강도범죄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층과 젊은 층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범죄는 단순절도임을 보여주고 있다.[8] Shichor와 Kobrin(1978)은 노인범죄의 대다수는 단순 폭행범죄이며 재산범죄는 주로 단순 절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였으며,[9] Covey와 Menard(1987)는 노인범죄는 단순절도가 가장 빈번하고, 다

6) Flynn(2000), “Elders as perpetrators” in *Elders,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pringer: 43-83.
7) Wilbanks(1984), “The Elderly Offender: Placing in Problem in Perspective” in *Elderly Criminal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 83-108.
8) Wilbanks · Murphy(1984), “The Elderly Homicide Offender” in *Elderly Criminal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 79.

음으로 폭행과 살인, 강도, 절도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0]

셋째, 노인들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노인 폭력범죄에 비해 노인 재산범죄의 상대적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11] 1980년대에 노인과 다른 연령집단을 비교한 Covey와 Menard(1987)[12]는 노년층에서는 절도, 주거침입절도, 단순절도의 재산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젊은 층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의 폭력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13]

2. 노인범죄 발생원인

노인범죄 동향분석에 비해 인과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연구의 대부분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이론 등 기존의 이론을 노인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 것들이었다. 기존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Akers 등의 연구이다. 이들은 기존의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이 노인범죄를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14]

아노미이론에서는 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기대치와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며, 이것이 곧 범죄나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삶의 위기나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

9) Shichor · Kobrin(1994), "The Extent and Nature of Lawbreaking by the Elderly: A review of arrest statistics" in *Elderly Criminal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Publisher's Inc. : p. 17-32.

10) Covey · Menard(1987), "Trends in Arrests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7: p. 666-672.

11) Steffensmeier(1987), "The Invention of the "New" Senior Citizen Criminal: Analysis of Crime Trends of Elderly Males and Elderly Females, 1964-1984", *Research on Ageing* 9(2): p. 281-311.

12) Covey · Menard(1987), op.cit.

13)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의 연령별 범죄율을 분석한 Flynn(2000)의 연구에서는 65세 노인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서 0.7%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범죄유형별로 노인폭력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 재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Akers et al.(1988),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viant Behavior among the Elderly", *Older Offenders: Perspectiv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raeger: p. 35-50.

시키고 아노미상태를 가져온다고 해석한다.[15] 즉, 노년기에 은퇴, 배우자의 상실, 이전 역할의 상실과 새로운 역할의 부재 상태,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지위 등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된 삶의 환경이 노인들에게 스트레스 및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범죄란 개인의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발생된다고 논의한다. 개인은 직업이나 좋은 명성을 통해서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개인을 결속시키는 요인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학교생활이 중요할 수 있으며[16] 성인의 경우에는 결혼관계나 직업활동이 중요할 수 있다.[17] 반면, 노년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가족해체, 은퇴나 실업으로 인한 역할과 지위상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될 수 있다고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은퇴, 실직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은 노인범죄의 원인이 되며,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변화나 기술발전과 조기은퇴가 노인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불법적인 대안을 찾도록 한다[18].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은 노인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범죄인 단순절도나 상점절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빈곤이나 직업적 지위상실로 인한 좌절과 무력감은 노인들의 잦은 폭력행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국가경제불황도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업율과 노인의 재산범죄는 역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업율이 늘면 합법적인 일자리가 줄고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하므로 노인들의 일탈적 행동이나 범죄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인 살인범죄자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친구집단과 경제상황의 영향을 덜 받으며 오히려 은퇴나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크게

15) Akers et al.(1988), op.cit.
16) Hirschi(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3.
17) Sampson · Laub(1990),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 609-627.
18) Fishman(1977), "Crime Wave as Ideology", *Social Problems* 25: p. 531-543.
19) Shichor · Kobrin(1994), op.cit.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0] 또한 노인일탈의 대표적인 유형인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도 노인의 금전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1]

3. 노인범죄의 상관요인

범죄와 관계있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행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노년 범법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수의 연구는 대게 청소년층의 범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관찰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 여기서 다루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반드시 노년층에 국한된 요인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분석된 독립적인 변수들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노년층의 범죄에 대한 원인과 상관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험적인 보충 자료로 쓰일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연구들은 대게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범죄의 원인과 상관 요인이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분석이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샘플 그리고 각 연령대와 다른 독립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을 명백히 나타내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조사가 다양한 범위의 연령대를 망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연구들은 거의 한 번도 각 연령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리뷰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그 결과가 일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층과 다른 일반 인구에서 나타나는 범죄 발생 요인들이 노년층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하기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노년층을 다른 연령대와 구별해 따로 분석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경우 노년층이 장년층이나 청소년층에 비해 가지는 진정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노년층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등이 그동안 없어 왔음에도

20) Feinberg(1984), "Profile of the Elderly shoplifter" in *Elderly Criminals*: p. 35-50.
21) Flynn(2000), op.cit.

불구하고, 이에 비해 딱히 월등히 낫다고 할 만한 비교 분석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준화된 상관관계가 전 샘플에 걸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인구간의 차이점을 그러한 연구들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22]

1) 연령, 인종 그리고 성별

일반 인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에서 학자들은 연령대와 불법 혹은 일탈 행위에 대한 자기 보고의 관계에서 강한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3] 이와는 반대로, 최소한 범죄의 자기 보고와 인종과 성별에 대한 보고들은 그것들이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한 경우[24]나 혹은 노년층을 포함한 많은 부분이 성인이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25]에 관계없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연령대와 인종 혹은 성별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Hagan은 그의 예측과 일치하는 각각의 세 가지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는 상호 관계가 어떻게 더 많은 추가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동일한 결과가 자기 보고가 아닌 공식적인 범죄 정보를 활용한 보다 더 적절한 연구

---

22) Hanushek y Jackson, *Satistical Method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 Academic Press, 1977, p. 79

23) Tittle, C.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pp.90-96; Meier, R. and W. Johnson. 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p.301; Minor, W. 1977. "A Deterrence Control of Crime," pp. 128,131 in Theory in Criminology: Contemporary Views, edited by R. Meier. Newsbury Park, CA: Sage

24) Jensen and Eve, 1976; Kraut, 1976, p.360; Hindelang, Hirshi, and Weis, 1981 *Measuring Delinquency.* Newbury Park, CA: Sage p.161; Elifson, Petersen and Hadaway. 1983 "Religiosity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1. p.520; Paternoster et al. 1983a; Farnworth, M. 1984. "Male-Female Differences in Delinquency in a Minority-Group Sample."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p.204; Pestello, H. 1984. "Deterrence: A Reconceptualization" Crime and Delinquency 30: 593-609

25) Tittle, C.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pp. 81-89, 93; Meier, R. and W. Johnson. 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디자인에도 나타날 것인지,[26]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소수 집단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2) 결혼 유무

청소년에 한정된 연구[27]나 일반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28] 모두에서 혼인이 유무가 범법 행위에 끼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후자의 연구의 경우 남편을 여의고 과부 생활을 하는 것의 여부와 범법 행위의 관계는 연령대별로 조사하였을 경우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과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흔히 노년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배우자를 상실한 것이 특별이 노년층이 범법 행위를 하게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Tittle[29]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결혼 유무가 범법 행위에 끼치는 영향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3) 신앙심 (Religious Commitment)

연구들을 통해 나온 증거들은 신앙심이 청소년 비행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으며,[30] 종교적 커뮤니티 안에서도 단지 약하거나 아니면 r의 미미한 수준의 영향만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31] 이러한 연구들에서 우리는 신앙심이 노년층과 그 이하

---

26) Kercher, K. In Press. “Causes and Correlates of Crime Committed by Elderl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Current Issues in Aging, edited by E. Borgatta and R. Montgomery. Newbury Park, CA: Sage.

27) Farrington, D. 1979. “Longitudinal Research on Crime and Delinquency” In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1, edited by N. Morris and M. Ton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8) Tittle, 1980, p.124

29) Tittle, 1980, p. 92

30) Stark, R., L. Kent, and D. Doyle. 1982.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Ecology of a ‘Lost’’ Relationship”,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4-24

31) Stark, Kent, and Doyle, 1982; Elifson, Peterson and Hadaway, 1983

의 연령대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4) 주거의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Kornhauser[32]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녀가 주거의 이동성은 사회적 결합을 붕괴시키는 원인이며 따라서 불법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이동성과 범죄 상호간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는 거대 대도시 내나 아니면 대도시간의 이동에서만 나타나며, 농촌 지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의 이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뚜렷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주거 밀집지역 내의 혹은 주거 밀집지역 간의 이동이 범죄에 끼치는 영향은 청소년층보다 노년층과 장년층에게 오히려 더 약하게 나타난다.[33]

5) 과거의 범죄 행위 여부(Prior Criminal Behavior)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범죄 행동이 전력이 청소년의 범범 행위뿐만이 아니라 중년층과 노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노년층의 경우에 과거의 범죄 전력과 범법 행동과의 상호 연관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를 사전에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노년층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Goetting[34]의 연구에서 그녀는 재산 범죄를 저지른 노년층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더 많이 과거에 수감되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32) Kornhause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An Apraisal of Analytic Mode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ttentag, M. 1968. "The Relationship of Unemployment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24:105-114

33) Tittle, 1980, p. 140

34) Goetting, A. 1983. "The Elderly in Prision: Issu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291-309

6)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 SES)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법 행위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35]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그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대체하여 실시한 연구에서는 범죄와의 관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36] Thornberry와 Farnworth가 횡단면적 디자인을 사용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그들은 흑인의 교육 수준과 폭력 범죄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37] Thornberry와 Cristenson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역시 흑인의 경우 실업이 범법 행위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38].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다르게, 일반 인구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39]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가 서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Tittle은 사회경제적 지위(수입, 직업, 그리고 교육 수준의 혼합 지표)와 흑인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와의 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감마 = .54), 이것은 위에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

35) Tittle, C., W. Villemez, and D. Smith. 1982.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More on the Class/Criminality Controvers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435-438; Johnson, R.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6) Thornberry, T. and M. Farnworth. 1982. "Social Correlates of Criminal Involvement: Further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and Criminal Behavior." American Sociologcal Review 47: 505-518; Thornberry T. and R. Christenson. 1984. "Unemployment and Criminal Involvement: An Investigation of Reciprocal Causal Structures." American Sociology Review 49:398-411

37) Thornberry, T. and M. Farnworth. 1982.

38) Thornberry T. and R. Christenson. 1984.

39) Stark, R. and McEnvoy. 1970. "Middle-Class Violence" Violence Today 4:52-54; Minor, W. 1977 "A Deterrence-Control Theory Of Crime." Pp.117-137 in Theory in Criminology: Contemporary Views, edited by R. Meier. Newbury Park. CA: Sage; Grasmick, H., D. Jacobs, and C. McCollom. 1983. "Social Class and Social Control: An Application of Deterrence Theory." Social Forces 63:359-374; Tittle, 1980; Meier and Johnson, 1977; Tittle, C and W. Villemez. 1977.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Social Forces 56:474-501

가 발견되었던 것과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결과들 간의 모순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Grasmick, Jacobs, and Mccollom[40]은 이러한 결과가 폭력 · 살인 등 심각한 범죄의 측정에 있어서 일반 인구보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라고 제시하며, 따라서 가장 하찮은 종류의 범죄들만이 사회 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결과들 간의 모순이 생기는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지위는 노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 아노미

아노미의 개념[41]은 좌절, 낮은 자존감, 소외감, 무규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야망과 실제 기대치와의 괴리,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모순[42]" 다양한 정의를 망라하고 있다. 많은 수의 연구들은 자기의 야망과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의 괴리가 청소년비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나,[43] 실제 이러한 관계를 직접 측정한 연구에서는 그 관계는 거의 없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44] 또한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과 연관시켜 아

40) Grasmick, H., D. Jacobs, and C. McCollom. 1983.

41) Merton, R.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42) Pope, H. and M. Ferguson. 1982. "Age and Anomia in Middle and Later Life: A Multivariate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of White Men" Internation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51-73.

43) Elliott, D., and S. Ageton, and R. Cantor. 1979. "An Intergrated Theoretical Perspective on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3-27; Johnson, R.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25; Bernard, T. 1984. "Control Criticisms of Strain Theories: An Assess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dequa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353-372

44) Aultman, M. 1979. "Delinquency Causation: A Typological Comparison of Path Model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0:152-163 tables 2,4; Johnson, R. 1979. pp. 105-108 ; Cernkovich, S. 1978. "Evaluation Two Models of Delinquency Causation: Structural Theory and Control Theory." *Criminology* 16: p.348; Mernad, S. and B. Morse. 1984. "A Structuralist Critique of the IQ-Delinquency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pp. 1368-1373; Elliott,

노미를 측정한 연구에서도 그다지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45]. 청소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충분한 결과는 노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8) 공범의 여부

동료 집단의 범죄성은 청소년 비행에서 그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46]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보다 연령대가 더 높은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Dull(1983)[47]과 Meier and Johnson[48]은 개인의 마약 남용과 그 친구들의 마약 남용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Tittle[49]은 그가 추출해 낸 청소년과 성년층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범죄자인 친구를 두는 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Tittle의 결과가 청소년과 일반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Dull과 Meier and Johnson과의 연구와의 유사점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개인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범죄자 동료 집단이 끼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든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이다.

9)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 (Attachment to Significant Others)

많은 리뷰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부모가 범죄 성향을 띠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할

D., D. Huizinga, and S.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Newbury Park, CA: Sage. pp. 21-30, 70-89, 109-118

45) Aultman, M. 1979, tables 2, 4; McCarthy, J. and D. Hoge. 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396-410

46) Johnson, R. 1979. ; Matsueda. R.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p. 500; Elliott, D., and D. Huizinga, and S. Ages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Newbury Park, CA: Sage. pp. 71-84, 109-118

47) Dull, R. 1983. "Friends' Use and Adult Drug and Drinking Behavior: A Further Tes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p. 1608-1619

48) Meier, R. and W. Johnson. 1977.

49) Tittle, 1977, Sanction Fear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Social Forces* 55: pp. 590-591

경우에- 청소년 비행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50], 실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만이 발견된다.[51]

소년기 아동들에게서 관찰되는 또래에 대한 애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불일치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연구에 있어서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과들이 나왔다[52]. 대부분의 조사자들이 이러한 또래 집단에 대한 애착이 전형적(사회 규범의 틀 내에 있는)인 친구인지 아니면 범죄 성향을 띠는 친구인지에 대한 구별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혀 놀랍지 않다.

불행히도,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조사는 개인에게 의미를 갖는 다른 이들에 대한 애착에 대한 영향을 전혀 조명하지 않아 왔다. 청소년의 연구에서 나타난 아주 미미한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단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50) Weis, J., J. Hall, J. Henney, J. Sederstrom, K. Worsley, and C. Zeiss. 1979. *Peer Influence and Delinquency: An Evaluation of Theory and Practice*, Part I and Part II. National Institute f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ohnson, 1979, p.117; Hawkins, D and J. Weis. 1980.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Loeber, R. and T. Dishion.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82-90

51) Johnson, R. 1979. p.117; Matsueda. R. 1982. p.499; Paternoster, R., L. Salzman, T. Chiricos and G. Waldo. 1983a.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 p.474; Mernad, S. and B. Morse. 1984. pp.1373-1374; Elliott, D., and D. Huizinga, and S. Ageston. 1985. pp.109-118

52) Johnson, R. 1979. p.117; Paternoster et al. 1983a. p.474; Wiatrowski, M., D. Griswold, and M. Roberts.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25-541

10) 범죄에 대한 신념 (Criminal Beliefs)

그동안 행해진 범죄에 대한(혹은 도덕적) 신념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왔으나, 많은 수의 통제 변인들을 추가했을 경우 그 상관관계는 약하거나 혹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53]

이와는 반대로, Matsueda[54]는 많은 수의 통제 변인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신념은 청소년 비행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다르게, Matsueda는 측정과 오류에 대한 설계를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한 비신뢰성을 정정해 나갈 수 있게끔 하였다. 더군다나, 그의 연구 결과는 공범의 여부를 포함한 범법 행위에 대한 주요한 예측 요인들이 전부 간접적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그것들은 범죄에 대한 신념이라는 중간 통제 변수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다.

일반 인구에 대한 연구 또한 청소년층에 대해 실시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측정의 오류를 분석하지 않을 시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가, 각종 통제 변수를 도입할 경우 그 상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일견 보기에는 범죄에 대한 신념이 연령과 상호 작용하며 범법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에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는 Matsueda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노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측정의 오류를 정정해 나감과 동시에 많은 수의 통제 변인을 사용한다면, 노년층의 경우에서도 범법 행위와 범죄에 대한 신념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53) Johnson, R. 1979. p.117 ; Strickland, D. 1982.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 Comment and Critiqu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p.165; Krohn, M. and J. Massey.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pe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p. 537; Wiatrowski, M., D. Griswold, and M. Roberts. 1981. p.537; Paternoster et al. 1983a. p.472; Elliott, D., and D. Huizinga, and S. Ageston. 1985. pp.109-118

54) Matsueda. R. 1982.

11) 억제 요인 (Deterrence Factors)

외형상 그리고 내재적인 억제 요인은 의미 있는 타인이나 형사 사법 체계 등이 개인의 범법 행위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측정한다.

십대 인구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외형적 그리고 내재적 억제 요인이 매우 약하거나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55]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른 연령층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자세하게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상당히 한정된 연구만이 노년층이 억제 요인에 대한 반응이 청소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56]

4. 범죄와 연령간의 관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개입이 감소한다는 명제는 범죄학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57]. 그러나 연령과 범죄 관계의 강도와 보편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학적인 견해는 청소년기 또는 성년 초기에 범죄발생이 정점에 달하였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감소는 모든 연령-범죄 분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분포들의 특성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8]

먼저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와 이론에서는 연령과 범죄 간에 다음

---

55) Minor, W. and J. Harry. 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90-203; Saltzman, L., R. Paternoster, G. Waldo, and T. Chiricos. 1982. “Deterrent and Experietal Effects: The Problem of Causal Order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72-189; Paternoster et al. 1983a. p.474; Bishop, D. 1984. “Legal and Extralegal Barri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2:403-419

56) Tittle, C. 1980. pp. 296-299

57) Quetelet(1831), *Research on the Propensity to Crime of Different Ages*, Hayez: p. 3.

58) Mannheim(1965), *Comparative Criminology*, Houghton Mifflin: p. 21.

과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대부분의 범죄발생수준은 청소년기 또는 성년기 초반에 정점(peak)을 이루고, 이후 꾸준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 종류에 따라 범죄성의 정점 연령, 그리고 정점으로부터 감소하는 비율은 다르다. 셋째, 산업화의 영향으로 정점 연령은 지난 40여 년 동안 더욱 낮아져 왔으며, 정점연령으로부터 연령 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급격해져 왔다는 것이다.[59]

또한, 검거에 대한 연령 분포에서 범죄 종류에 따라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성인과 비교해보면, 청소년들은 강도, 절도, 반달리즘과 같은 범죄로 표상되는, 충동적이고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 유인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충동적인 범죄는 또래 집단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신체적 강인함과 이동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범죄는 마약이나 알콜과 관계된 범죄와 마찬가지로 "충동적"이거나 탐색적인 범죄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소득보다 "스릴"과 동료의 인정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따라서 이들 범죄의 연령 분포는 청소년기에 높게 나타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범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여, Hirschi와 Gottfredson(1983, 1986)은 범죄에 대한 연령분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60]. 나아가 그들은 연령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에 오류가 있으며 범죄에 대한 연령 분포는 범죄학자들이 현재 기초하고 있는 사회학적 이론, 예컨대 긴장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요인 변수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이론에 따라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덧붙여, Hirschi와 Gottfredson은 특정 연령에서 범죄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것은 다른 연령에서도 범죄의 원인으로 충분히 식별되는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따라서 코호트와 장기적인 연구 디자인이 범죄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다.[61]

---

59) Steffenmeier et al.(1989), "Age and the Distribu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p. 803-31.

60) Hirschi · Gottfredson(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p. 552-84.

61) Hirschi · Gottfredson(1983), op.cit.

그러나 Hirschi와 Gottfredson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회적인 원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살피는 데 전반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먼저, 범죄의 유인동기와 기회는 연령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동일하게 '초기 정점 연령과 급격한 감소' 패턴을 따른다고 보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예컨대, 횡령과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의 상당수는 얻는 것이 많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낮은 연령에서 정점을 이루지도,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없다. 수익이 좋은(lucrative)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횡령·사기와 같은 범죄가 이사진, 전문 범죄자, 기업 경영인, 부패한 관료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62] 일반적인 범죄들의 연령곡선과는 달리, 이들 수익이 좋은 범죄에 관한 연령 곡선은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뒤늦게 정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낮아지지도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박에 대한 연령 곡선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리고 공중도덕 위반 범죄(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매춘)과 대인 범죄(예: 살인과 상해)는 이성적인 제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문화적인 설명력이 큰 특징을 지니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며, 성인기 전반에 지속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는 연령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범죄 발생의 결과는 범죄와 연령 그룹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Rowe와 Tittle은 사회 통합(integration), 도덕적 헌신, 제재에 대한 두려움, 범죄의 효용성(utility) 등과 같은 사회학적인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사회적 과정이 연령-범죄 관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Tittle이 실행한 본래 조사에서의 통계적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Kercher(1983)는 Tittle의 자료는 도덕적 헌신과 범죄자 집단과 같은 사회학적 변수들의 매개를 통하여 연령이 범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내었다.[63] 이외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규범위반에 대한 Jensen의 연구(1977), 피고용자의 절도에 대한 Hollinger와 Clark의 자기보고식 연구(1983), 18세 이상 성인들의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Meier와 Johnson의 연구(1977)등

62) Steffenmeier et al. (1989), op.cit.

63) Kercher(1987),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rime: The biological vs. Sociological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Montreal, Quebec.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사회학적 변수의 효용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범죄경력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하여 비록 분절적이기는 하지만 연령-범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학적 변수들이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지되고 있다(Shover 1985; McCord와 Sanchez 1983; Trasler 1979; Farrington 1986; Steffensmeier et al. 1989에서 재인용).

나아가 연령 분포가 시간, 공간, 인구 집단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연령-범죄 분포는 사회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때의 사회적 변인은 모든 문화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것과 같은 문화적 보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연령-범죄 관계에 관한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UCR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 중 서로 다른 기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일한 시점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피상적으로 UCR 자료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내리고 있다[64]. 둘째, 가용한 검거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범죄에 관하여 연령 곡선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의 범죄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요약 index를 사용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범죄만을 비교하여 연령-범죄 관계에 관한 불완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65]. 셋째, 검거에 관한 연령 통계는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의 상대적인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연령 비율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66]. 마지막으로, 연령-범죄 분포의 불변성 가정을 검토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범죄에 관한 연령 곡선 추이를 단순히 좌표 상에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Hirschi · Gottfredson 1983; Greenberg 1985; Cohen and Land 1987; Steffensmeier et al. 1989에서 재인용).

때문에 아직까지 범죄학적 문헌 가운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범죄 분포를 살펴본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Steffensmeier의 연구(1989)는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연령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다

64) Hirschi · Gottfredson(1983), op.cit.

65) Hirschi · Gottfredson(1983), op.cit. ; Cohen · Land(1987), "Age Structure and Crime: Symmetry vs. Asymmetry and the Projection of Crime Rates Through the 199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p. 170-83.

66) Mannheim(1965), op.cit.

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첫째, 그는 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 곡선의 동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UCR의 25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대한 연령별 검거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시간에 따른 연령-범죄 분포의 불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년 전과 40년 전의 연령-범죄 패턴과 현재의 연령-범죄 패턴을 비교하고 있다.

예컨대, 10대에서의 범죄 증가율과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초반의 최고 범죄율은 젊은이들 간에 경험한 범죄학상의 유인(reinforcement) 원인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노년층의 범죄 감소율은 성인기에 수반되는 순응(conformity)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순응에 대한 스스로의 또는 강력한 인식이 아직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합법적인 길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들의 의존적인 지위로 인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인지적 발달의 미성숙함으로 자신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신중함이 부족하다.

연구를 통해 Steffenmeier(1989)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동년대의 청소년 사이에 나타난 신분상승의 욕구 때문에 1940년과 1980년 사이에 젊은 범죄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범죄를 대물범죄, 대인범죄, 약물 중독, 공공질서 위반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급격히 감소하는 범죄 유형이 있는 반면,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보다 천천히 감소하는 범죄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재산 범죄 중에는 절도, 자동차 절도, 반달리즘과 같은 범죄가 10대에서 정점을 이루고 급격히 감소하며, 강도의 경우에는 검거의 75% 이상이 2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데, 재산 범죄 가운데 위조, 사기, 도박과 같은 범죄는 20대 후반에서 정점을 이루고 대지형(plateau)을 이루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천천히 감소함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연구 결과에서, 대인범죄에 있어서도 살인과 가족・아동에 대한 가해보다 강간과 다른 상해를 범하는 범죄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코올과 마약 범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제한지역에서의 운전보다 범죄의 시점이 젊고 일정 시기에 상당히 편포되어 있다. Steffenmeier는 이러한 분포 차이가 연령과 관계된 범죄의 동기와 기회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67]

67) Steffenmeier et al. (1989), op.cit.

Ⅲ. 연구의 방법

1. '노인'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노인범죄'란 노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범죄의 종류가 아니며 법적인 개념도 아니다. 즉, 본 연구에서의 '노인범죄'는 '노인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상에서 노인범죄의 수는 많게 나타날 수도,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연령적인 규정은 노인범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인에 대한 개념규정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소의 고려와 함께 사회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노인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분류되고 범주화되는가,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집단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중요시한 것이다.

특히, 노인을 어떻게, 어느 연령부터 시작되는가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 또는 문화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일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년학자인 브린(Breen)은 "노인의 개념에는 생물학적·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노인을 ① 생리적·생물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보았다.[68] 이에 앞서, 1951년 7월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①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② 생체의 자체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④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사람, ⑤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노인을 약간 다르게 규정하였다.[69]

---

68) Breen(1960), "The Aging Individual"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p. 161-163.

69) 김종오(1997),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7.

따라서 조사연구를 위해 편의상 사용되고 있는 노인의 정의는 ① 개인적 자각에 의한 노인(self-awaring age), ② 사회적 노인(social age), ③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노인, ④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노인의 4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0]

1) 개인적 자각에 의한 노인(self-awaring age)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노화의 생물학적·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의이다.

2) 사회적 노인(social age)

이는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의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 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대다수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든 정의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55세에 정년퇴직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55세 이후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노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노인

시간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시간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노인의 생리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인 면에서 노화의 제특성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인에 해당하는 집단을 파악, 관찰하는 데 용이하며 사회·입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70) 장인현·최성재(199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45-48.

면에서의 편의성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간 차이뿐 아니라 개인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역연령에 의한 노인정의는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65세 이상을 모두 노인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노인의 개인적 및 사회적 특성이 무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Neugarten은 55-75세까지의 노인을 연소노인(young-old)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을 고령노인(old-old)으로 재차 구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Brody는 60-74세를 연소노인(young-old), 65-74세를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하고 있다.[71]

4)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노인

이는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 기능의 정도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산업노년학(industrial gerontology)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있는 노인의 정의이다. 노화로 인한 다른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의 특수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 및 개인간의 노화의 특성이 다름을 감안한 장점이 있으나 실제 이러한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및 기타 행동적 판단기준이 복잡하고 이러한 판단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편의성과 객관성이 미약한 것이 큰 단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즉 환갑을 지난 사람들을 노인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72]. 이는 교원과 고위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 미만이며, 일반 기업체에서의 정년도 55세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한노인회, 대한삼락회, 한국성인교육회, 요산요수회, 대한적십자장년봉사회, 전국노인학교협의회 등의 정관에 명시한 입회자격은 만 60세부터이고, 그 밖의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노인학교의 입학자격도

71) Neugarten(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p. 187-188.
72) 서병숙(1995), □□노인연구□□, 교문사: p. 75.

이와 비슷한 연령규정을 가지고 있다.[7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해 노인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만 60세를 기준으로 노인 및 노인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회갑을 지난 만 60세를 노령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정년이 55-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은퇴 시기가 유사하며, 셋째, 국민연금법상 정상연금 수혜연령 또한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넷째,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고령자범죄'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범죄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식 자료에서 제시하는 범죄노인의 연령 기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범죄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61세와 71세, 즉 만 60세와 만 70세 이상 범죄인을,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에는 만 60세 이상 범죄인을 특히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관련 연구자들은 이들 범죄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61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종오, 1997; 이영남, 1998).[74]

2. 사례연구

본 연구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61세이상의 노인에 의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사례연구의 한계는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일반화(generalization)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큰 장점중의 하나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을 때 사회적 사실의 진실적 실체발견을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일정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의 의미 있는 가설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haughnessy, & Zechmeister, 1990).[75] 본 연구에서는 범죄 유형별 노인 범죄의 사례가 선정되었고,

---

73) 김종오(1997), op.cit.: p. 5.

74) 그러나 교정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범죄의 연령을 노인범죄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범죄노인을 클라이언트로 삼는 교정복지 실천은 노인복지에서 다루는 서비스 대상자와 상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75) Shaughnessy, J. J., & Zechmeister, E. B. (1990).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각종 언론매체에 나타난 기술적 내용도 일부 사례로서 활용되었다. 사례연구(case study) 기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일련의 현상이 “어떻게(how)” 발생하고 계속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Yin, 1994).[76] 이러한 사례연구 기법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Stake, 1994)[77] 나뉜다. 첫째는 일정한 현상에서 발현되는 고유한 특색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고유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ies)이다. 보통 상세하고 자세한 기술이 그 특징이다. 둘째는 이론적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ies)이다. 이론적 전제와 함의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는 이러한 양자의 목적을 함께 혼합하여 갖고 있는 집합적 사례연구(collective case studies)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범죄의 특징을 이해하며 또한 이론적 함의에 대한 고찰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합적 사례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데이터 출처

자료의 출처는 경찰청, 범죄분석, 경찰백서 및 경찰내부 통계자료와 법무부 보호국 내부 통계자료이다. 사례의 출처는 기관을 직접방문하여 공식서류를 읽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전문한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의 <표 Ⅲ-1>은 공식자료에 정의된 죄형분류의 내용이다.

<표 Ⅲ-1> 공식자료에 정의된 노인범죄의 죄형분류

유 형	내 용
폭력범죄자	형법상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포함한 인원임
지능범죄자	사기,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수뢰, 유가증권, 통화, 문서인장에 관한죄를 포함한 인원임
성폭력범죄자	형법상 강간죄와 특별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한 인원임
마약범죄자	마약법, 특가법(마약), 舊 대마관리법, 舊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포함한 인원임

76) Yin, Robert (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77) Stake, R. E. (1994). Case studi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Ⅳ.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범죄: 연령과 범죄

1. 고령화 사회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현재 지속되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의한 범죄의 수도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인구의 노령화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인구의 비중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농업이 주를 이루던 1970년대(평균출산율4.5명)에 비해, 현재 2000년대 출산율은 평균1.3명으로 1/3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의 주 원인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독신 및 만혼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평균: 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또한 고령화 추세의 큰 원인이다.

<그림 Ⅳ-1>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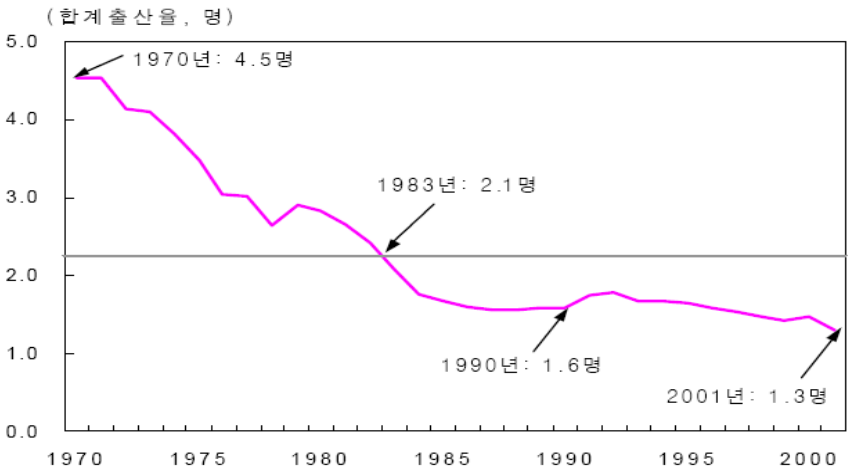

주: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
자료원: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2) 고령화의 매우 빠른 진행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한다. 이것은 선진국의 평균 노령인구 비율인 14.1%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보통 선진국들은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통 40년에서 115년이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추세로 계속 가다간 불과 19년 만에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인구증가율도 2020년 0%를 지나 2024년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78)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에서 인용

<그림 Ⅳ-2>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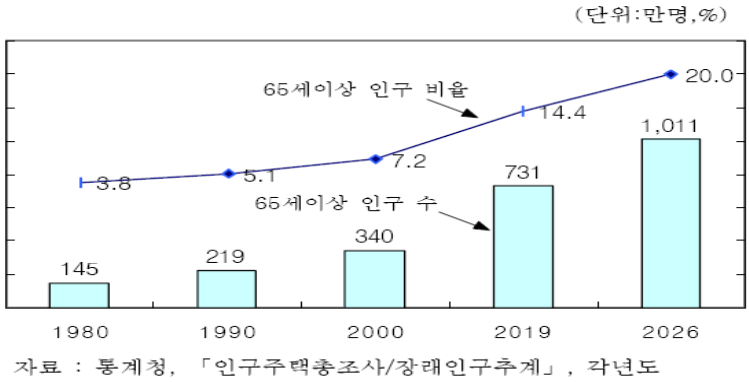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또한 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유년인구의 감소로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며, 노령화 지수(유년인구 100명당 노년인구 비율)는 2019년이면 102.3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1990년(20.9) 대에 비해 약 7배나 상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이(14.4%) 유년인구 비중(14.1%)을 초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Ⅳ-3> 유년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추이[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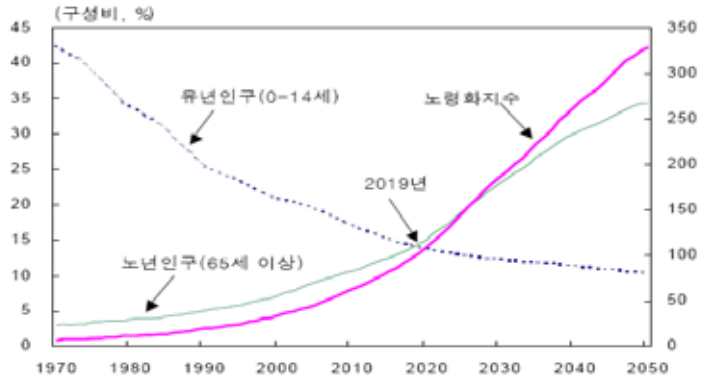

주: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 세 인구)] *100
자료원: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79)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서 인용
80)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에서 인용

2. 노인범죄 현황

1) 강력범죄의 변화 추이와 노인범죄자 비율

경찰청 통계를 따라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살인범은 1996년 776명에서 2005년 1,178명으로 약 1.52배 증가한 반면, 그중 61세 이상 노인살인범 1996년 18명에서 2005년 96명으로 무려 약 5.33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강도범의 비율을 봐도 전체강도범은 1996년 5,098명에서 2005년 5,084명으로 오히려 약간의 하락추세를 보였지만(0.99배), 그중 61세 이상의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5명으로 급증하여 무려 10배가 넘는 12.5배나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은 1996년 총6,788명에서 2005년 총 10,942명으로 1.61배가 증가하였고, 그중 61세 이상 노인성폭력범은 91명에서 430명으로 4.72배 증가하였다. 방화범은 1996년 전체 685명에서 2005년 1,616명으로 2.35배가 증가하였고 그중 61세 이상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59명으로 7.37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더라도[81] 노인에 의한 강력범죄 특히, 강도범죄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한 노인 10만명당 강력범죄율은 1970년 23.7에서 2000년에 75.9로 220% 증가하여 청소년층(96%), 성인층(7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 된다.[82]

81)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1년 179만명에서 2000년 521만명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5.3%에서 2000년 11.1%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통계청, http://kosis.nso.go.kr)

82) 이현희 · 원영희 · 구자숙, 2003,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 제2호

<표 Ⅳ-1> 최근 10년간 주요 범죄 대비 61세 이상 노인범죄자 비율

구분	살인범			강도범			성폭력범			방화범		
	전체	61세 이상	비율	전체	61세 이상	비율	전체	61세 이상	비율	전체	61세 이상	비율
1996	776	18	2.3	5,098	6	0.12	6,788	91	1.34	685	8	1.17
1997	857	23	2.7	6,394	10	0.16	7,712	117	1.52	747	16	2.14
1998	1,095	33	3.0	8,333	10	0.12	8,378	159	1.20	1,142	21	1.84
1999	1,125	38	3.4	8,487	20	0.24	9,187	227	2.47	1,018	19	1.87
2000	1,058	35	3.3	6,337	22	0.35	9,253	231	2.30	1,087	21	1.93
2001	1,171	59	5.0	5,547	23	0.41	8,581	249	2.90	1,220	28	2.30
2002	1,051	42	4.0	5,453	24	0.44	11,154	272	2.44	1,135	34	3.00
2003	1,085	50	4.6	6,970	27	0.39	11,953	347	2.90	1,417	41	2.90
2004	1,200	64	5.3	6,466	32	0.50	11,066	381	3.44	1,546	51	3.30
2005	1,178	96	8.1	5,084	75	1.48	10,942	430	3.93	1,616	59	3.65

구분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마약범		
	전체	61세 이상	비율	전체	61세 이상	비율	전체	61세 이상	비율	전체	61세 이상	비율
1996	52,030	317	0.61	336,094	4,707	1.40	216,004	5,976	2.77	2,268	226	9.96
1997	56,290	419	0.74	350,021	5,088	1.45	210,020	6,321	3.25	2,525	218	8.63
1998	73,194	562	0.77	389,279	6,547	1.68	256,492	7,964	3.10	3,912	206	5.27
1999	68,811	818	1.20	475,053	9,117	1.92	285,500	1,0864	3.81	5,428	280	5.16
2000	66,082	901	1.36	517,612	10,695	2.07	217,768	9,116	4.20	5,389	401	7.44
2001	59,472	1,000	1.68	513,935	11,449	2.23	221,984	9,372	4.45	5,041	225	4.46
2002	63,644	1,183	1.86	636,915	10,651	1.67	231,441	9,201	3.40	5,794	383	6.61
2003	61,651	1,210	1.96	435,664	12,101	2.78	261,773	9,741	3.72	4,233	476	11.24
2004	68,398	1,763	2.58	452,553	15,609	3.45	396,752	1,6292	4.11	4,741	602	12.70
2005	72,149	2,092	2.90	435,765	16,930	3.90	355,104	1,7735	5.0	4,090	358	8.75

* 단위 : 인원(피의자통계원표)
*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6-2005, 재구성

2) 절도범죄의 변화 추이와 노인범죄자 비율

일반적으로 노인범죄의 특징 중 하나로 높은 재산범죄율을 들 수 있는데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 횡령, 절도, 배임 등의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절도범죄의 추이를 보면, 1996년 총52,030명에서 2005년 총72,149명으로 1.39배가 증가

하였고, 그중 61세 이상 노인절도범은 317명에서 2,092명으로 무려 6.6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절도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대응력, 검거기술,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검거인원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노인의 이상심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검찰청 분석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 10만명당 범죄를 의미하는 노인 재산범죄율은 1970년 89.5에서 2000년에 192.5로 115% 증가하였는데, 청소년(129%), 성인(94%)의 재산범죄율 변화와 비교하면, 세 집단의 재산범죄율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83]

3) 폭력범죄의 변화 추이와 노인범죄자 비율

폭력범죄자는 1996년 총336,094명에서 2005년 총435,765명으로 1.29배가 증가하였고, 그중 61세 이상 노인폭력범은 4,707명에서 16,930명으로 3.59배 증가하였다. 또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노인에 의한 폭력범죄율도 1971년 12.5에서 2000년 20.9로 늘어났다.

노인에 의한 폭행범죄와 노년기 이상심리와는 '공격성'이나 '경직성' 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지을 수 있는데 노년의 상황에서는 자기주장을 관철함이 강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여성의 경우 공격성이 강해지고, 자신에게 익숙해 있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집하는 경직성, 이를 고수하려는 보수성 등은 노인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지능범죄자는 1996년 총216,004명에서 2005년 총355,104명으로 1.64배가 증가하였고, 그중 61세 이상 노인지능범은 5,976명에서 17,735명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마약범죄자는 1996년 총2,268명에서 2005년 총4,090명으로 1.80배가 증가하였고, 그중 61세 이상 노인마약범은 226명에서 358명으로 1.58배 증가하였다.

4) 노인범죄 죄종별 증가 추이 상대적 비교

아래의 그림 <Ⅳ-4>는 노인범죄의 죄종별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범죄에 있어

83) 이현희 · 원영희 · 구자숙, 상게서

가장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살인범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지능범, 성폭력범, 폭력범 등도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4> 노인범죄 죄종별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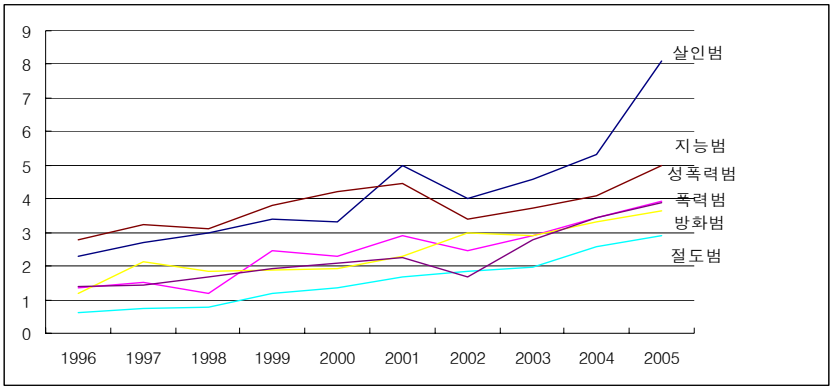

(1) 노인범죄 죄종별 추이(강도)

아래의 <표 Ⅳ-5>는 노인범죄 중 강도범죄의 추이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강도의 경우는 가장 증가율이 높았는데, 1996년에는 불과 0.12%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5%를 차지하여 무려 약 12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Ⅳ-5> 노인범죄 죄종별 추이(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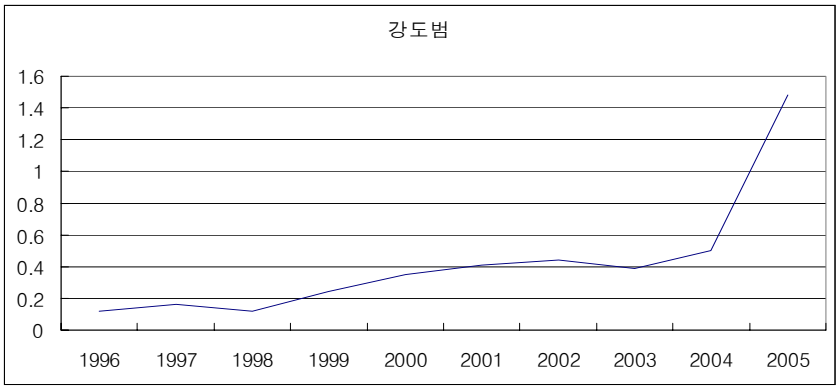

(2) 노인범죄 죄종별 추이(마약)

다른 범죄유형은 모두 증가의 추세를 나타내었지만 마약범죄는 61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약1%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에는 8.8%로 다소 낮아진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6> 노인범죄 죄종별 추이(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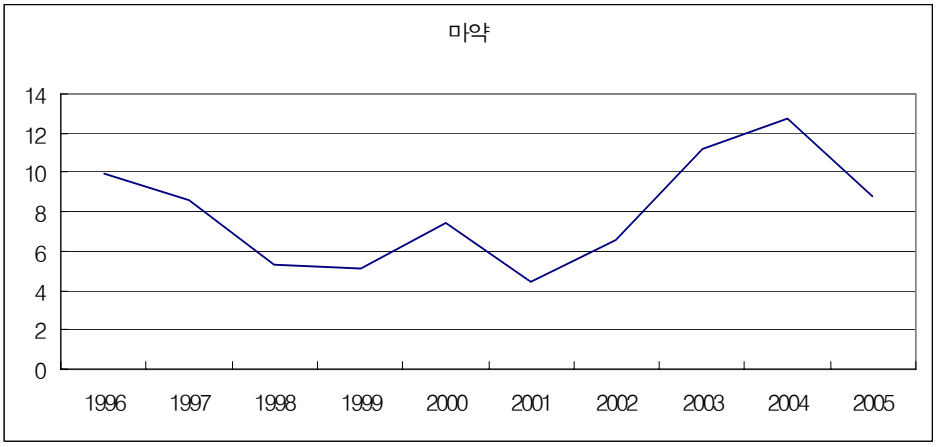

(마약범 1996년~2005년 전체 1.80배↑, 61세 이상 1.58배↑)

3. 연령과 나이의 관계

1) 연령대별 범죄자 빈도: 1996년과 2005년 대비 (경찰자료)

아래의 그림은 1996년 및 2005년 두 연도의 연령대별 범죄자의 빈도를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96년도에서는 30대가 범죄연령대의 정점을 형성했으나 2005년도에서는 40대에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곡선의 모양이 우측 상향으로 이동한 형태이므로 범죄자가 고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61세 이상의 범죄자도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범죄인원 및 비율

구분	계	14세미만	14-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이상	미상
1996	1,551,400	2,149	151,028	425,130	536,894	296,582	109,365	27,720	2,532
비율	100.0	0.1	9.8	27.4	34.6	19.1	7.0	1.8	0.2
1997	1,672,355	1,875	169,043	436,135	571,649	341,250	118,598	31,302	2,503
비율	100.0	0.1	9.8	25.8	34.1	20.4	7.0	1.7	0.1
1998	1,862,996	1,440	169,664	450,563	634,656	419,029	144,983	38,755	3,906
비율	100.0	0.0	8.7	23.9	34.0	22.4	7.7	1.9	0.2
1999	1,926,158	1,339	161,880	440,889	640,724	457,764	167,521	48,563	7,478
비율	100.0	0.0	8.1	22.6	33.2	23.7	8.6	2.4	0.3
2000	1,897,415	1,437	165,854	433,406	609,648	464,469	166,705	50,702	5,194
비율	100.0	0.0	8.5	22.6	32.0	24.4	8.7	2.5	0.2
2001	1,980,174	1,378	157,387	460,600	622,172	502,712	173,707	54,233	7,985
비율	100.0	0.0	7.5	23.0	31.4	25.3	8.7	2.7	0.3
2002	1,942,987	1,667	140,310	459,154	592,278	516,354	171,611	55,005	6,608
비율	100.0	0.0	6.7	23.4	30.4	26.5	8.8	2.7	0.3
2003	1,917,210	1,376	118,423	435,708	576,172	538,651	179,659	58,176	9,055
비율	100.0	0.0	6.2	22.8	30.1	28.1	9.1	3.0	0.5
2004	2,267,904	1,503	105,442	470,833	646,535	650,752	225,120	80,053	87,666
비율	100.0	0.1	4.6	20.8	28.6	28.7	9.9	3.6	3.9
2005	1,969,826	1,179	96,073	372,467	548,801	591,018	221,626	89,968	48,694
비율	100.0	0.1	4.8	18.9	27.9	30.0	11.3	4.6	2.4

* 단위 : 인원(피의자통계원표)

자료 : 경찰청, 범죄분석, 1996-2005, 재구성

2) 설 명

(1) Gottfredson과 Hirschi

Gottfredson과 Hirschi는 일반적인 원칙과 간결성을 범죄 설명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겼으며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참여, 범죄경력의 지속, 범죄의 빈도 등에 하나의 원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원인이 바로 범죄경향(criminal propensity)인데, 범죄경향은 어렸을 때 형성되어 전 인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사람마다 범죄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초범의 나이, 빈도, 지속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범죄와 나이의 상관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낸(age-crime curve)범죄와 나이의 상관곡선은 불변하고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10대 후반 이나 20대에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점점 범죄를 적게 저지르는 성향이 원칙이고, 다만 중요한 학문적 관심으로서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범죄경향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2) Blumstein, Jacqueline, Cohen, David Farrington

Blumstein, Jacqueline, Cohen, David Farrington은 범죄경력에 있어서 단 하나의 설명요인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각 범죄패턴마다 다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경력 패러다임은 인생전반에 걸친 개인의 범죄를 여러 가지의 범위로 특징지었는데, 참여, 빈도, 초범했을 때의 나이, 범죄를 그만뒀을 때의 나이로 구분하였다. Blumstein과 Cohen, Farrington[84]은 이러한 분류를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각 범주마다 다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Moffitt의 발달론적 분류[85]는 범죄경력패러다임에 명백하게 기초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발달론적 분류는 인생과정에서 각각의 범죄패턴은 상이한 인과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범죄에 대한 관점은 Patterson 과 Yoerger[86]의 입장과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들어난다. 물론 이 두 관점에서도 초범의 나이는 장기간의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이지만, Patterson과 Yoerger는 늦게 시작한 범죄를 똑같지만 강도가 약한 인과관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Moffitt는 완전히 다른 인과과정으로 파악한다.

---

84) Blumstein, Alfred, Jacqueline Cohen, and David P.Farrington 1988a.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26:1-36.

85) Moffitt, Terrie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674-701.

86) Patterson. Gerald R., and Karen Yoerger. 1993. Developmental models for delinquent behavior. In crime and mental disorder, ed. sheilagh Hodgins. Newbury Park, CA; Sage.

(3) Thornberry의 상호작용적 이론

상호작용적 이론은 범죄의 실행, 빈도, 지속과 같은 범죄경력 특성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각각의 서로다른 인과과정에서 끌어내지는 않는다. 이 이론은 그 대신 통일된 설명을 통해 범죄경력패러다임에 의해 강조된 현상에 간결하고 일반적인 틀을 사용한다.

Thornberry와 Krohn은 모든 나이에서의 범죄는 모든 관련된 인과관계의 총체의 결과라는 간단한 가정을 통해 이러한 통일적인 관점을 취한다. Thornberry는 나이에 의해 구분되는 주요한 인과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Sampson과 Laub[87]의 발달론적 관점을 더욱 확대시켰다. 상호작용적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한 상관관계는 인과변수영향의 차이가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좋지 못한 양육은 인생 초반기에 범죄를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일찍 다양한 양육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범죄에는 부모의 훈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십대후반에 있어서의 범죄는 동료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들어서기 전에는 많은 비행청소년을 사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변수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나이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이 다르다기 보다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결한 원칙은 매우 어린 나이에 예외적으로 비행청소년을 사귀게 되는 경우 이것 또한 인생초반기의 범죄에 강한 영향력을 줄수 있고, 좋은 훈육으로부터 나쁜 훈육으로의 급작스런 전환은 십대후반의 범죄를 야기할 수 도 있다.

범죄경력 패러다임에 있어서 범죄의 발생과 지속에 대한 서로 다른 인과과정을 가정하는 입장과는 반대로 상호작용적 이론은 범죄의 지속과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통합된 관점을 취한다. '범죄는 가능한 모든 인과변수의 결과'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Thornberry는 범죄의 지속을 지속적인 원인들과 초반의 원인들과 후반의 원인들과의 상호관계의 조합을 통해 설명하려 하였다. 따라서 신경심리학적인 장애와 옳지 못한 훈육은 비교적 일찍 발생하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범죄를 야기하며, 이러한 범죄는 지속되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변수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학교에서의 실패와 같은 후반

87) Sampson, Robert J., and John H. Laub. 1992. Crime and deviance in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63-84.

의 인과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Ⅳ-7> 노인범죄의 연령대별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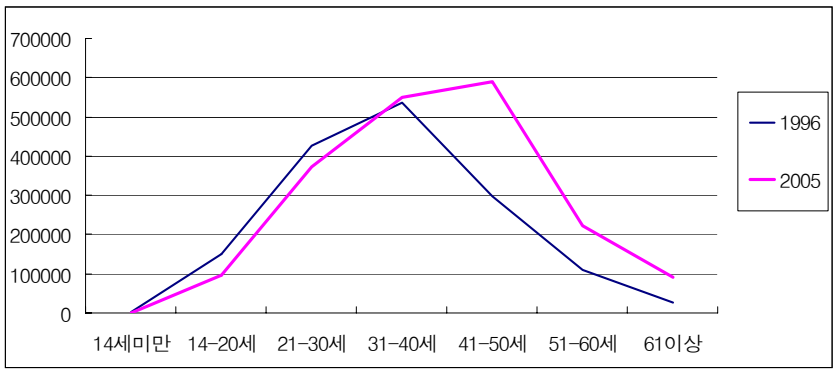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Ⅳ-8> 처럼 미국의 범죄학 연구가들의 연령에 따른 범죄발생현황의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범죄에 연루되는 정도가 가장 높은데, 17세 즈음에 최고조를 이루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제시한다(Moffitt, Terrie E.1990). 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조사는 자기보고식, 기관에 의한 공식 자료, 법정에서의 판결 등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범죄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Ⅳ-8> 미국의 범죄발생과 연령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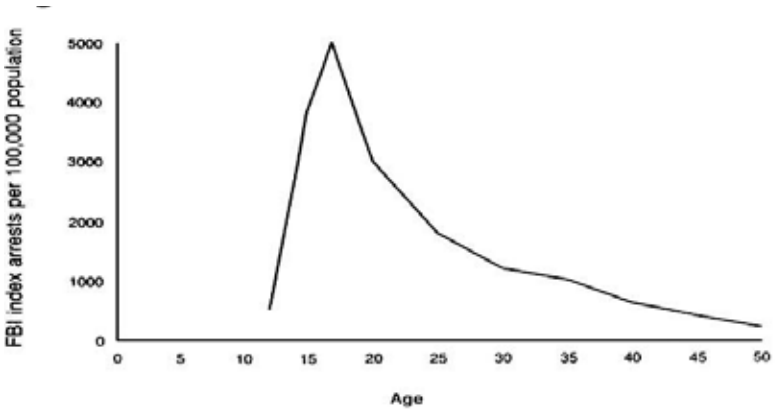

한편, <그림 Ⅳ-9>는 우리나라의 연령에 따른 범죄발생현황의 분포를 나타낸것이다. 보호관찰소에의한 통계를 기초로 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발생율이 최고조를 이루는 연령대는 14세-9세로 미국과 비슷하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20-29세에 감소세를 보였던 범죄율은 30-39세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 후에 감소를 시작해 50-59세에 이르러서는 급감소를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국내에서 국방의 의무가 대부분 20대에 이루어짐에 따라 범죄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감소로 인해 20-29세에 감소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30-39세에 있어서의 범죄의 증가, 그리고 40-49세에 있어서도 여전히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Ⅳ-9> 한국의 연령과 범죄자 수의 비율 - 보호관찰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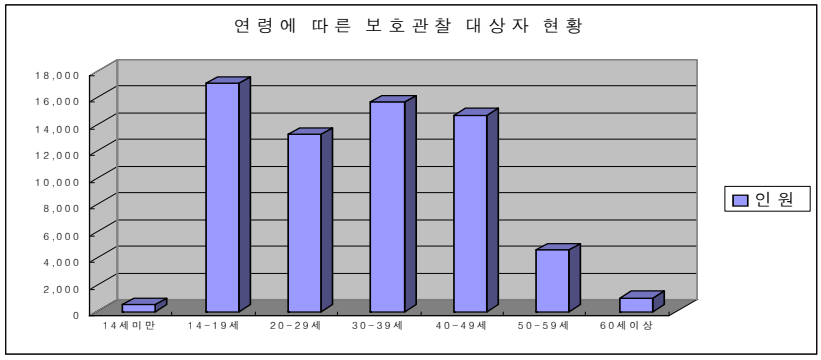

또한 아래의 <그림 Ⅳ-10>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범죄발생현황을 연령에 따라 분류해놓은 그래프이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와의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역시 미국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의 범죄발생율은 31-40세의 범죄발생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율은 31-40세에 최고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이 집행유예나 가석방, 소년범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복지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전체 범죄율에 대한 통계치로 관찰하기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림 Ⅳ-10> 연령에 따른 국내 범죄 발생율 - 경찰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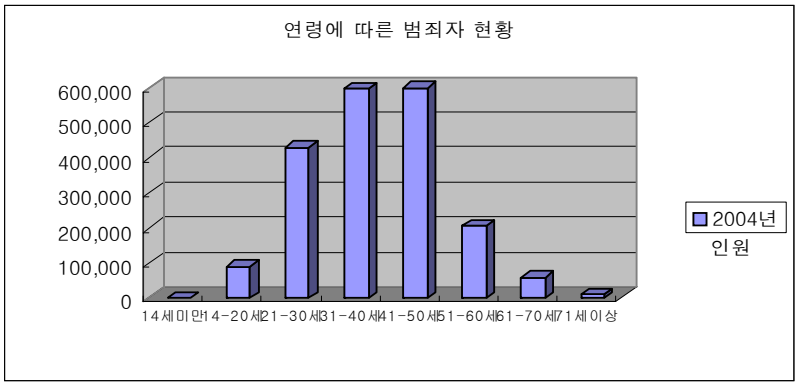

위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사회, 문화적 차이, 사회인식과 사회 통제의 차이에 의해 나라마다 범죄율의 최고와 최저를 이루는 연령대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어느 일정한 연령대에 들어서서는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자율성이 다소 제한된 점과 사회계층의 구분은 존재하되 인종의 구별은 없다는 것을 청소년기 범죄발생율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구열풍이 대단히 높고, 약물사용과 총기소지에 대한 접근율도 낮으며 빈곤이나 부모의 직업등으로 인한 낙인은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단일 민족으로 인종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흑인이나 히스페닉인들에 의한 범죄율이 백인의 범죄율보다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부장문화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미국보다 높은 범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다른 주로 독립을 하거나 대학의 등록금 역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고 노후에 사회보장 체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잘 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자녀의 대학교육까지를 책임지고자 하는 한국부모들의 부모로서 안고 있는 짐, 그리고 경제의 불황, 불안한 노후 등이 높은 범죄율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노인범죄의 특성

1. 일반적 노인범죄의 특성

1)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88]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불안, 욕구불만, 흥미 감퇴 및 인내력 감퇴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가져오며,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증가시키게 되고 노인의 활동성 감퇴, 자기중심적 경향, 그리고 행동 및 적응력 감퇴 등과 같은 노인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노인범죄의 이해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경제적 특성[89]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시스템의 미비로 아직 국가적 차원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은 효사상의 약화로 자녀나 형제로 부터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남편의 수입에 주로 의지했던 미망인은 사별 후 수입이 끊기기 쉽고 반면 아내를 사별한 노인은 아내가 해주던 서비스의 대부분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정신적 특성

범행자의 정신적 특성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노인이 같은

88) 윤진, 1985,『성인 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89) 정창모, 2006,『금융사고 사례와 대책』, 매경출판(주)

정신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사별

배우자의 사별은 노년기에 흔한 일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오랜 결혼생활을 마감한 노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누구도 죽은 배우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배우자를 사별한 남녀 모두 기혼자들보다 높은 비율의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남성들은 아내 사별 후 머지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② 지각기능의 변화

지각지능은 감각기관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의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으로서 연령증가에 따라 지각과정의 속도가 저하된다. 노인이 지각능력이 둔화되는 것은 생물학적 노화로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체계의 활동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90]

③ 우울증경향의 증가

연령증가에 따른 우울증(depression) 경향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고독감,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은 개인의 적응능력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중년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화에 따라 사물의 판단

90) 윤진, 1985, 『성인 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과 활동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면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내향성의 증가에 비례하여 수동성도 증가하게 되는데 청·장년기에 비하여 노년기에는 문제해결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경향은 감소된다. 심지어는 신비적인 힘이나 우연에 맡기려는 비현실적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⑤ 의존성의 증가

노인은 신체적 노화 및 경제적 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의존성이 점차 증가한다. 이러한 의존성은 그 원인에 따라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사회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 심리적 및 정서적 의존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노인이 될수록 심리적 및 정서적 의존성이 더 커지고 특히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이러한 심리적 및 정서적 의존성이 더 커질 수 있다.

(4) 사회적 특성

일반적으로 사회화(socialization)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역할 등을 획득하여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아동의 사회화와 성인의 사회화로 구분될 수 있다. [91] 사회화는 노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나 대부분 사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노년기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습득하여 사회체계의 중요한 참여자로 남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노년기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규범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화과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2) 노인의 일반적 특징의 투영: 사례1

아래의 사례는 서울에서 발생했던 것으로서 대표적인 노인범죄의 특징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91) 서봉연·이순형, 1989,『발달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사례 1】사건 개요

2006년 11월 30일 16:25분경, 평소 00금융기관을 자주 이용하던 중산동 박00(65세, 남)은 은행이 가장 바쁜 날인 말일, 마감 시간 30분을 남겨두고 00은행 00지점을 방문. 평소 안면이 있던 창구 직원 김00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주고 돈 2,30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인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이라 이상히 여긴 김00 직원에게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 노00의 통장인데 지금 퇴원을 하려고 수속 중이라 본인이 왔으며, 자식들이 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 급히 본인이 왔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김00 직원에게 자식을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넋두리 했다.

말일인데다 마감시간 직전이라 매우 바빴던 김00 직원은 평소 거래를 해온 고객이라 별 의심 없이 돈 2,300만원을 인출. 현금으로 달라는 범행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으로 가져가시면 위험하시다고 설명하고 2,300만원을 1장짜리 수표로 발행. 계속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아 수표를 들고 00은행을 나왔다.

다음날 전날 박00에게 인출해준 노00의 돈 2,300만원이 미심쩍어 노00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자녀로부터 노00은 현재 미국에 있는 자녀 집으로 여행 중이며, 박00은 아버지의 치매기가 시작된 2년 전부터 자주 집에 와서 아버지와 말벗이 되어 주는 등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없어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2006년 12월 1일 09:40분경 범행을 확인한 김00은 책임자에게 보고 후, 해당 수표를 지급정지하고 경찰에 신고. 도주한 박00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3일만에 고향인 경북 봉화 00여관에서 검거하게 된다.

(2) 범행자의 특색

범행자 박00은 1942년 경북 봉화에서 출생. 소학교 졸업 후 대구, 구미 등 대도시를 전전하다 1979년 일산에 정착. 처와 2남 1녀를 두고 있던 박00은 일산지역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살던 중 일산신도시 개발로 약간의 보상자금을 갖게 됨. 장녀는 일찍 출가하여 캐나다로 이민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장남과 차남은 부모에게 생긴 약간의 보상자금으로 다투다 차남은 지방에서 직장을 얻어 정착. 부인 정00 여사가 생존하여 있을 때는 종종 왕래가 있었으나 2004년 5월 부인과 사별 후부터는 왕래가 없었다.

장남 박00(47세)는 아버지의 보상자금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가끔 아버지에게 들러 돈을 요구. 술을 먹고 종종 아버지 00에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동네사람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었다.

범행자 박00(65세)는 장남의 사업실패로 노년의 나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년전 부인과 사별 한 후부터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3) 범행의 동기

범행자 박00은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증, 신경쇠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주변에는 그런 내색을 많이 하지 않는 성격으로, 범행대상이 되었던 00은행은 과거 일부 보상자금을 유치해 주었던 경험 등으로 박00을 예우해 주고 있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노00이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종종 노00에게 들러 말벗이 되어주던 중, 장난삼아 노00이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사행성 오락을 하게 됨. 이 후 일주일에 한두 번, 노씨의 집에 들러 현금 등을 훔치기 시작한 박00은 사행성 오락에 중독되어 사채 등의 빚을 지기 시작했다. 노00이 딸의 집으로 장기간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00은 노00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훔쳐 평소 안면이 있던 00은행을 찾아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한 김00 직원에게 들러 종종 안부 인사를 하는 등 안면을 익혀두며 은행의 업무가 가장 바쁜 시간과 책임자가 없는 시간 등을 체크 한 후, 은행의 가장 바쁜 시간을 골라 범행 시도하였으나 현금이 아닌 수표로 돈을 인출해가 범행 3일 만에 체포 되었다.

(4) 일반적 특징

본 사례에 나타난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65세인 박노인은 장남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인과의 사별, 자녀들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우울증 증

상이 있었다. 또한 신체적 노화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사행성 오락 중독이 많은 채무를 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3) 남성의 노화와 가정폭력: 사례2-5

노인범죄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가정폭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노인에 의한 가정폭력 사례의 개요, 범행상황, 동기 및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1) 사건개요

【사례 2】

피의자 이○○는 당61세이며, 개인용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한○○은 당55세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1980.경 결혼한 부부지간이다.

2006.9.11. 피해자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밤11시에 귀가하였다.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이유삼아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만히 해결코자 동네 호프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말다툼 중 격분한 피의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500cc 빈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사례 3】

피의자 나○○는 당62세이며 무직이고, 피해자 백○○은 57세로 보험설계사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1986.경 결혼한 부부지간이다.

2006.7.26 21:00경 피해자가 맥주1병 정도를 먹은 상태에서 귀가 후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총 길이 20센티, 칼날길이 9센티의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사례 4】

피의자 박○○은 당61세로 무직이고, 피해자 이○○는 46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의자와 피해자는 1999.3. 결혼하였다가 2001.경 이혼한 사이이다.

2006.5.26 00:30경 피해자가 평소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포장마차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자 인근 노래방을 뒤지던 중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마구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사례 5】

피의자 조○○는 당63세로 노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김○○은 당55세, 조선족이며 식당 종업원으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2005년 결혼한 부부지간이다.

2006.6.14 02:00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누워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등을 때려 왼쪽 눈 주변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범행상황

위의 노인에 의한 가정폭력 첫 번째 사례를 보면, 범행동기는 피해자의 늦은 귀가로 인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평소 남편은 욱하는 성격이 있고, 자신이 그러한 성격에 대해 비위를 잘 맞추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은 자신이 비위를 맞춰주지 않고, 일일이 말대답을 하자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피의자의 폭행 전력을 보면, 결혼 후 약3-4년 후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졌던 적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 실례로, 남편이 삼겹살을 구워달라고 하여 구워 주었는데, 이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주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맞을 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평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날 역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나 칼로 협박하기 시

작하였다고 한다. 남편의 범죄전력은 간통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남편의 진술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일부러 간통현장을 아내에게 알렸다고 한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과 이야기도 잘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금일 사건 역시 자신의 욱하는 성격을 알고 있는 아내가 일부러 자신의 화를 돋구었다고 진술하였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포장마차의 영업이 끝나도 바로 집으로 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포장마차 주변의 모든 노래방을 뒤져 피해자를 찾아내었고, 피해자가 남자손님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네 번째 사례를 보면, 피해자는 조선족으로 평소에도 남편이 술에 취하면 자신을 향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했다, 언제든 갈 년이다'라고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해왔다고 하였다. 이날 역시 새벽에 귀가한 남편이 술에 취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동기 및 심리상태

첫 번째 사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학력의 차이, 소득의 차이가 있는 부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평소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받아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 시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을 것인데, 이날은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있던 날은 피의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에 대해 '여자가 바람이 나면 그래도 외박은 안한다고 하더라'고 하는 등의 말을 꺼내어 은연 중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의심케 되고 화가 난 피해자가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자 맥주잔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하지 않는 모습에 더욱 화가나 실제 맥주잔을 던졌다고 하였다. 즉, 젊은 시절부터 피해자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체력에서의 우위, 사회적 지위, 가장으로서의 권위 등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존중 아닌 존중을 받고 살다가 노년이 된 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의자는, 평소에는 자신이 때리는 시늉만 하여도 피했던 피해자가 이날은 자신이 맥주잔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하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화가 더 많이 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사례에서 피의자의 심리상태 역시 첫 번째 사례에서의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피의자의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 소외감등에 대한 분노가 첫 번째 사례의 피의자보다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약10여 년 전부터 직업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고 하였다. 당시 목격자였던 20세의 딸의 진술을 들어보아도 피의자가 직업이 없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가정내 불화가 잦아져 피의자는 가정 내에서 언제나 무서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피의자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아내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그 전에 폭행을 당하여 왔음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혼을 거부해 왔다고 하였다.

세 번째 사례에서 가해자는 비록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지만, 아이들 때문에 끊임없이 아내의 활동반경과 행동에 간섭하고 있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사람은 14살이라는 나이차이가 나는 것 역시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남편의 폭력성을 증폭시킨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간섭, 이로 인한 말다툼과 폭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포장마차라도 운영하여 자식들을 양육코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편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신문조서 작성 시 '00시 넘은 시각까지 영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느냐'고 하는 등 이혼한 전 아내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욕을 드러내었다.

네 번째 사례는, 조선족 여자와 한국남성의 결혼 생활 중 일어난 폭행사례이다. 피의자는 재혼이고, 피해자는 초혼이라고 하였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경제적 소득이 낮아 중국의 친정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고, 이에 아내가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며 그에 대한 모든 수입을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피의자 역시 이러한 아내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4) 특 징

이상의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들에 의한 가정폭력은 대부분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속되어 온 경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범죄경력상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거의 없었다. 아내들은 아마도 결혼 초기부터 있어왔던 폭력을 만약 이혼의 경우 경제적 자립의 문제, 아이 양육문제 등의 이유로 참아오다가 피의자가 신체적으로 노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은퇴 한 후,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각자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능해진 남편에 대해 현재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여 사회적으로 힘을 잃지 않은 아내들이 더 이상 폭력을 참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징으로는 가해 노인 남성들이 대부분 음주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남편이 범행을 위해 술을 먹었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편들이 술을 먹고 범행을 하는 이유는 남편들의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술 자체가 사고를 흐리게 하고 평소 억눌렸던 감정을 공격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해 노인들이 폭력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 때렸다고 진술하거나 폭행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노인 가정폭력의 원인이 전통적인 가붕장적 인식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여성노인의 자기중심성과 공격성: 사례6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자기주장의 관철이 강해지며, 융통성보다는 경직성이 증가하고 일정한 자아상이 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공격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년기 속성 중 양성화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고, 남녀 모두 상대방의 성향과 특질을 취함으로써 남녀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중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성 노인은 점점 여성적이고 수동적으로 되며 의존성, 관계지향성, 친밀성 등이 강해진다. 이와 반대로 여성 노인들은 능동적이고 권위적이며 공격적 자기중

심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인범죄의 성별 분류 조사[92]에 의하면 남성노인이 약 83%, 여성노인이 약 17%를 차지하여 대부분 남성노인에 의한 범죄이지만 아래의 사례에서는 여성 노인의 독단적 공격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례 6】

피의자 강○○(62, 여)와 피해자 박○○(63, 남)는 5년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강○○ 여인은 2006년 6월 9일 밤 11시경 서울 신정동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평소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내역을 살펴보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잠에 깨어나자 곧바로 손톱으로 옆구리와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박○○가 영등포구 소재 아들집으로 피신하자, 익일 낮 2시경 피해자의 아들집으로 찾아가 남편(동거남 박○○)을 찾아내라며 현관유리와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또다시 형사입건 되었다.

5) 노화로 인한 반응시간 지연과 교통사고

인간의 지각지능은 일정한 감각기관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화됨에 그 지각과정의 속도가 저하됨이 보통이다. 이는 생물학적 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계의 반응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25세 이하 젊은 운전자가 사고 책임자로 확인된 사망사고 417건과 832건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한 한 결과에[93] 의하면, 노인층이 교통상황을 판단해 좌회전하기로 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79초로 젊은층의 10.81초보다 5초 이상 느렸다. 또한 노령 운전자는 좌회전사고가 34.6%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 운전자들은 신호위반사고가 37.5%로 가장 많았다. 결국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이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 지각에 따른 반응시간 지연

92) 강영실,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방안』,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2005, 158쪽 '<표1>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참조.

93) 2007년 6월 6일 이데일리 보도

등 노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노인의 과거 직업관련성과 사기: 사례7

노인의 과거 직업에 따라 현재 범하는 범죄 유형도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과거 직업이 일용직 등 단순 고용직일 경우 범죄수법에 있어 차용사기 또는 무전취식 등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범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개인사업이나 공무원 등과 같은 소위 화이트칼라 계층의 경우 소송사기나 부동산 관련 범죄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며 사건 양상 역시 복잡한 형태를 띤다.

【사례 7】

피고소인 갑(63세)은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제일모직의 대리점을 매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매매하겠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되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점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도 병행해 진행되었으며, 동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다고 고소가 되기도 함.

7) 노인 격정과 살인: 사례 8

최근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급증, 전체 범죄의 1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그 예로 근래에 80대 할머니가 부부싸움 끝에 90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몇 개월 전엔 89세 할아버지가 85세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살을 기도한 사건도 있었다. 노인의 살인범죄의 경우 보통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불평 등 사소한 행태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무렵부터 시작된 세칭 '황혼 이혼' 열풍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로부터 유리된 노부부들이 가정 내에서 함께 부대끼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잦은 다툼이 많아지고, 이에 더하여 각종 스트레스 요인들이 가세함에 따라 결국은 부부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유리이론(disengagenent theory) 과 스트레스 이론으로 노인의 살인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노인, 특히 남자 노인들이 은퇴 후에 집 외의 사회로부터 점점

더 유리됨에 따라 스스로가 쓸모없거나 거부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발생한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 등 일차적 집단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과의 스트레스 및 긴장이 증가하게 된다. 만성적인 질병, 배우자의 죽음이나 무능력, 은퇴, 자녀들로부터의 지원 부족,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이 노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키게 된다.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한 사례는 가족간, 푸대접에 따른 노인에 의한 살인사건으로서 범인이 결혼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형집에 함께 살면서 괄시한다고, 형, 형수, 조카를 부엌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이었다.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이 주요 동기이다. 직업이 없이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거나 홀대를 대를 받을 때 불만이나 분노로 표출되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살인범죄의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노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개인적 특질요인들이 많다.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방식이 성격특질의 이상적표현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다. 성격장애를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융통성이 없는 부정응적 반응이 반복되거나 대인관계의 갈등이 심하게 드러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성향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데 노인 살인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 의한 폭력성은 정신적 질병이나 정신적 능력의 저하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Newman과 Gerwirtz[94]에 의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적 혼란의 발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특히 개인의 폭력성이 최고에 달하는 때가 60세 이상의 그룹이라는 것을 밝혀냈다.[95]또한 Hucker 와 Ben-Aron[96]은 노인 가해자들의 가장 빈번한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뇌 기관의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과 신경증(neurosis), 반사회적 병증(antisocial type)이 아닌 성격장애들(personality disorders)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한 살인사건 179건을 조사한 외국의 연구는 노인 살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였다. 오직 그들의 16%만이 범죄

94) Newman, E. S., Newman, D. J., & Gerwirtz, M. L., (Eds.). (1984). Elderly criminals. Cambridge, MA: Oelgeschlager, Gunn & Hain.

95) Walker, N., & MacCage, S. (1973). Crime and insanity in England, Vol. 2.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96) Hucker, S. J., & Ben-Aron, M. H. (1984). The elderly sex offender. In R. Langevin (Ed.), Erotic preferences, gender identity, and aggression in men (pp. 211-22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전과가 있었다.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89%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고, 특히 사례의 25%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였다. 발생장소는 대부분(74%) 집이었으며, 또한 사례의 81%가 사소한 말다툼의 결과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신을 지속적인 잔소리로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총으로 살해한 경우, 또는 두 오랜 친구가 포커게임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살해한 경우 등이다. 가해자의 과반수 가량이 살해 당시 음주를 하고 있었고, 또한 과거 알코올남용의 경력이 있었다.

8) 노인 우울증과 자살: 사례9-10

노령화에 따른 우울증(depression) 경향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에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질병과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여건의 악화,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은 노인의 심리적 부담을 강화시킨다.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우울증을 점차 증가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울증은 개인의 적응능력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다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노인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 6.8%에서 1990년 9.8%, 2000년 18%, 2003년에는 25.2%로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자살의 사례가 아래에 잘 나타나 있다.

【사례 9】

2007년 1월 18일 오후 4시 30경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박모(71, 여)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김모(42)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박모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특히, 3년 전 외아들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뒤부터 줄곧 혼자 생활해 왔다. 경찰은 외부에 나타난 외상 없고, 방안에서 '미안하다, 잘 있거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박씨가 우울증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말지었다.

【사례 10】

대상자 김○○(79, 남)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연립주택에서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로 증권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엘리트 출신이나 퇴직이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 생활하는 일이 많아졌고 2002년부터 우울증과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심지어 2006. 12월 초순경에는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등 약물남용과 탈수 증세로 인하여 10일간 입원하였다 퇴원하는 등 극도의 우울증세를 보이던 중, 2007. 2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화장실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수건걸이에 목을 매 자살하였다.

9) 노인빈곤과 절도

노인들의 절도범죄의 경우 대체로 은퇴나 실직과 같은 경제적인 빈곤이 원인이 되곤 한다. 경제적 빈곤은 노인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증대시키며 쉽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구 가운데 4분의 1이 평균한달 36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75%가 한차례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율(25.9%)도 일반 가구(7.9%)의 세 배를 넘었다[97]고 한다. 결국 노인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이기기 위한 소액절도나 상점절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생계형 절도의 유형으로 표출될 수 있다. 긴장이론(Strain Theory)적 관점에서도 경제적 하위 계층의 경우 개인의 기대와 그 기대를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터 잡아,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를 성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노년의 실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기회의 박탈과 같은 이유에서 스스로 무력감을 갖게 한다. 또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자식들의 부모부양에 소홀해 지며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양상이 노인의 절도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7) 2007 경제학 공동학술 자료집. 국회예산처, 엘지경제연구원

10) 노인의 사회적 지위상실과 폭력범죄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죽음이나 건강의 악화, 사회적 고립과 같은 노년기의 특정한 상황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노미상태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의 죽음이나 가족해체와 같은 이유에서 노인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느끼며, 새로운 역할의 창출이 어렵고 노인에 대한 인간관계 내에서의 낮은 가치평가와 지위상실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실감과 변화들은 노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아노미이론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분업화된 사회와 해체된 가족제도를 조장하였으며 이는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어 노인층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감도 함께 낮아지고, 해체된 가족제도에서 나아가 사회 내에서도 그 결속력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에 대하여 좌절하게 되어 이러한 좌절의 대응방식으로 폭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빈곤과 직업적 지위상실, 역할의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와 다양한 형태의 긴장상태,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인간관계의 비합법적인 성향을 표출하게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분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폭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인 분노에 대한 표출과 보상심리를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차단된 기회, 개인적 무능력으로 인한 실패를 겪게 되거나, 배우자의 죽음, 질병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 또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무관심에 따른 불만스러운 삶의 형태에 따라 분노가 발생하고 이 분노가 폭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유대이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애착은 노년층에 있어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맺게 되는 애정적 결속력을 의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은퇴나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경우 사회적 상호관계가 결여되고, 직업 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 내에서 규정짓는 관습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질 수 있는 경향이 폭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11) 노인자존감과 성범죄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생활환경 변화에 의해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성과의 접촉기회가 없다는 것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으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학계에서는 노년기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힘을 빌린 덕분에 70~80세까지 성적인 능력이 유지되면서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성생활이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억눌려 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였다. 2006년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사회연구소에서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6명이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70~80세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야한 영화나 잡지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나 부인 외에 이성친구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노인 성 문제 전문가들은 "요즘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고 건강상태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을 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성생활을 돕는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성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황혼동거'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의 동거가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성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정신지체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노인에겐 다루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60세 이상 가해자에 의한 유아 성추행사건은 76건에 달했으며, 가해 노인들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한다.

특히 시골의 경우 아이들은 잘 알고 지내는 동네 노인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웃간에 왕래도 잦아 노인이 아이 혼자 있는 집에 드나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골에서 발생하는 노인 성범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감춰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적 비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아동치한범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수감된 성범죄자들 중 아동치한범은 대체로 강간범들보다 나이가 많다. 그들은 강간범들과 비교해 봤을 때 범죄력에서 성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범죄전과가 있었고, 강간범들과 같이 조기에 범죄를 시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oxter, Marshall,

Barbaree, Davidson, & Malcolm, 198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성범죄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정신지체 여성들에 대한 추행행위가 주목된다. 이런 종류의 성적 비행이 노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정신지체 여성들이 비교적 노인들이 다루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재연(再燃)된 성욕의 대상적 충족(代償的 充足)을 위한 것이라고 학자들에 의해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위에 소개한 노인 범죄를 설명하는 일반이론과 부합해서 볼 때, 성범죄자의 기본적인 동기유형에 따라 구분한 유형 중 남성성 확인형(Power-assurance rapist) 또는 권력형(Power-assertive rapist)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성성 확인형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서 여성에게 자신이 남성임을 과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이들은 여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만한 남성다운 외모나 체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데이트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통제력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성적으로 여성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매우 결여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려는 내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성행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

권력형으로 분류되는 성범죄자는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성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분노를 풀려고 시도한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체성, 성적인 능력 및 지배성을 증명함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 외소감을 부정하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노력이 성적 비행을 통해 드러난다(Hazelwood, 1987; 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최근 뇌의 특정 영역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범죄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노인 성범죄의 원인 또한 뇌손상 및 전두엽 역기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대한 연구들도 노인 성범죄를 일부 설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범은 2002년 8,969명에서 2003년 9,815명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5,856명으로 5,965로 집계되었는데,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중 1개월 이내에 동종 재범을 한 사람이 64명, 3개월 이내가 44명, 6개월 이내가 54명, 1년 이내가 93명, 2년 이내가 122명, 3년 이내가 89명, 3년 초과가 264명으로 모두 730명에 이르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 이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는 암수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재범률이 추정되어 진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림 V-1> 강간범죄의 재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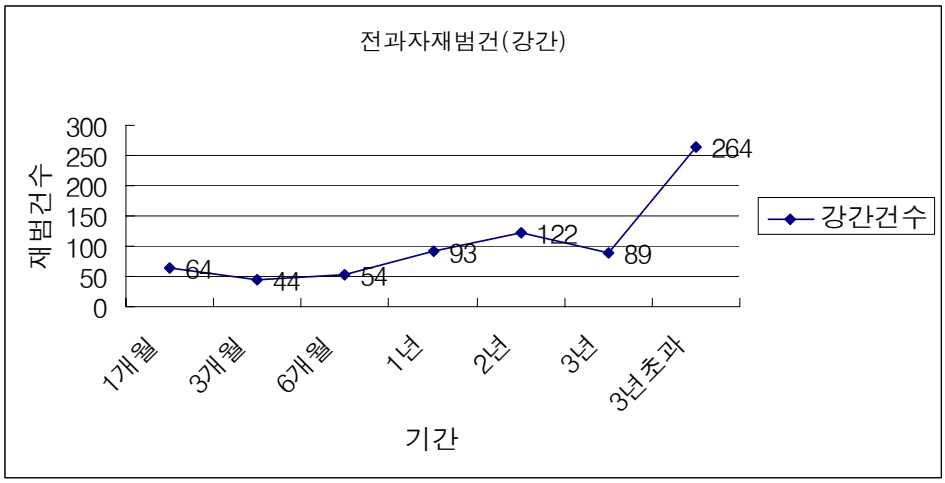

출처: 범죄분석, 2004[98)]

1999년 미국 Wisconsin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94세의 나이로 석방된 Ellef J. Ellefson의 사례를 보면, 그가 성범죄로 처음 입건된 것은 1937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수감된 것은 그의 나이 86세가 되던 1990년이었다. 그는 1937년부터 1990까지 총 6회에 걸쳐 교정시설에 성범죄혐의로 수감되었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생물학적 변화를 거친 노년기에 가서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

98) 박상진, 신준섭,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에서 인용.

과적 수술 및 화학적 약물 치료 외의 재범 예방 치료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부정적인 예후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60세 이후, 노인성 치매로 인한 강제추행 등의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젊어서 정력제 등을 선호하며 성욕을 과도하게 촉진시키려 한 사람들이 많이 속해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성범죄는 반사회적, 병리학적 생활방식과 같은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고,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성 및 정서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정서공감력이라는 자기개념화와 감정에 대한 이해 및 타인에 대한 반응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인이 늘고 있지만 노인의 성 문제는 폐쇄적인 전통적 관념에서 은폐 또는 왜곡돼 왔으며 논의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노인을 차별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는 노인에게 성적 권리가 아예 없다고 간주해 버리고, 노인들을 성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성적 쾌락과 만족과는 무관한 존재라고 옭아놓았던 가치평가가 노인들로 하여금 불만족스러운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은 노년기의 변화된 삶의 유형 등에서 오는 지위좌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적이상행동이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성적 고정관념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서 외면당한 노인들 중 일부는 이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일부는 매매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매스컴의 보도로 잘 알려진 것처럼 탑골공원을 비롯해 노인들의 쉼터가 된 공원의 속칭 바카스 아줌마, 다람쥐 아줌마를 상대로 심심찮게 벌어지는 노인들의 매매춘 행위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풍경이다. 아노미적 관점에서는 노인의 경우 세대 간의 격차와 그 계층에서 이룰 수 있는 사회성과 사회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때 고립되기도 하고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로 인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외되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일반긴장이론에서처럼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 성범죄는 현대 의학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와 성적 능력의 유지가 점차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소외 및 기능저하로 인한 상실감과 불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심리나 대상적 충족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역시 설득력이 있으며, 그 외에 성범죄자의 재범욕구 유지와 노년기의 전두엽 기능 손상 등으로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2) 경직성과 강한 보수성: 사례11-12

노인은 평생을 통해 구축된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성격적 특성은 완고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실무상 사기 등 경제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노인들도 쉽사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례 11】

상가건물 분양자 갑(46년생)은 동 건물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기소라는 주장을 계속 하였으나 이후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되자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역시 혐의 없어 내사종결 됨.

【사례 12】

피고소인 갑(1920년생)은 반남박씨 000파 도유사이자 000파 종원으로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종중땅 21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으나 자신은 무고를 당하였다며 고소 사실 외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쟁점은 말도 못하게 하며 이후 맞고소 하였으며, 고소인(43년생) 역시 횡령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종중회의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해 담당 조사관이 횡령 근거로서 미약하다고 하자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피고소인이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

13) 노인의 이상심리와 범죄: 사례13-14

불안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며 심하지 않다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병적 불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염려를 갖는 경우를 지칭하다. 노년기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높다고 한다.

노년기 불안장애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즉, 직업이나 수입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연관성이 있다. 불안장애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데, 특히 노인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흔한 스트레스는 신체질병 및 이에 따른 장애, 폭력적 범죄, 경제적 손실, 그리고 중요한 대상의 상실이다. 아래 사례는 불안장애로 인한 노인범죄 사례이다.

【사례 13】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김모 노인(77세. 남)은 정신지체인 35세 딸(미혼)과 함께 살고 있다. 노인은 동사무소 근로사업을 통하여 선천선 정신지체인 딸과 연명하고 있다. 원래 김 노인은 처와 딸 1명이 더 있었는데, 이들 모녀는 정신지체인 딸 문제로 가출하여 지금은 김 노인이 혼자서 딸을 돌보고 있다. 김 노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딸과의 가정불화이다. 이들 부녀로 인한 112신고로 지구대에서는 매일 두 세 차례 출동하였는데, 출동내용은 “가정폭력”이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먼저 부녀간 욕설, 심한 경우 폭행을 제지한 후 서로를 분리하여 처벌의사를 묻는데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즉, 부녀간 상호 폭행으로 서로 앙금이 된 상태에서 매일 싸우고 주먹질하고 심할 경우 딸이 노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병원에 실려 간 일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노인은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으므로 딸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즉,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세면을 할 때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타격을 입히곤 했다. 하여, 딸은 항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있었다. 이들 가정엔 평화란 없으며 오로지 방심하면 당한다는 불안만 있을 뿐이다. 노인의 불안심리는 갈수록 심해졌고, 그럴 때면 공원이나 할인마트 주변에서 서성거렸고,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여 한 번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수었고, 더 이상

딸을 돌 볼 힘이 없다며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노인은 그 동안 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폭행을 염려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기로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노인과 딸을 각각 요양소와 의료원으로 보냈다.

【사례 14】

2006년 7월경 40세 가량의 남자가 지구대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75세)가 모아놓은 신문 등 파지를 훔쳐가는 할머니가 있는데 여러 번 경고를 하였음에도 습관적으로 훔쳐가니 그 할머니를 절도죄로 입건하여 달라는 것이다. 탐문 결과 할머니 A씨(70세, 여)는 상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며 굳이 파지를 훔치지 않더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중산층의 다복한 할머니였다. 며칠 후 한 경찰관은 할머니에게 찾아가 왜 남의 파지를 훔쳐 가느냐고 하였더니 할머니는 “그 까짓것 몇 푼이나 되는데 그러느냐”, “내가 심심해서 그렇지 돈이 없어 하는 줄 아느냐”며 되려 화를 내고 다음에 또 훔치겠다는 의사까지 당당하게 표시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남이 모아놓은 신문이나 파지만을 훔쳐가는 습벽이 있어 파지를 수집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난 사람이었다.

14) 요약

이상의 사례연구이외에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징은 경찰의 사건개요를 일부 분석하여 아래에서 기술한다.

우선 노인의 폭력범죄는 체력적 취약성으로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친구지간이나 가정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소한일로 화를 잘 내고 가족 간에도 오랫동안 나쁜 감정이 쌓여 음주 후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지능사범의 특색은 횡령이나 배임은 적고 대부분 사기사건이다.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절도는 절도 전과자에 의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이는 절도의 습벽으로 재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순발력 및 시력 저하, 운동 신경저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노인들은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갈취, 소매치기를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도소를 가기 위해 자의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자식 혹은 주변사람에게 주목 받고 싶어 벌인 범죄와 치매 등 정신이상으로 벌이는 범행도 있었다. 그리고 강도의 경우는 도박 등의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경우도 있었다.

2. 만성적 노인범죄의 특성

직업적 범죄자의 특징은 범죄의 실행과 형사사법기관에서의 검거와 기소, 유죄판결과 구금시설에서의 수감생활, 이후 출소이후의 사회부적응 및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현실적 여건, 생계형 혹은 직업적 범죄의 실행, 뒤이은 형사사법기관의 검거와 기소절차, 이후 유죄판결과 구금시설에서의 수감생활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형태의 재범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만성적 직업범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격정적인 감정의 상태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우선 범죄자체를 생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습적인 소매치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조직범죄, 도박 등의 범죄와 마약, 매춘,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생계의 수단으로 범죄자체를 활용하는 범죄들이 다수를 이룬다. 또한 만성적 직업범죄자의 특징으로는 사회화과정은 이미 범죄화(犯罪化)되어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결핍되어 있으며, 일탈 및 비행의 경험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 범죄인 (chronic offender) 들은 Wolfgang에 의하여 범죄자의 18%, 필라델피아의 남자들 중 동시출생집단 6%에 해당한 사람들이 18세의 남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거의 절반(52%)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들은 이러한 개개인을 만성적 범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정의는 그 이후로 세계적으로 범죄 경력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ambridge의 연구에 따르면 표본의 6%, 범죄자의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범죄의 49%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99] 스톡홀롬

99) Farrington, D. P, and West, D. J. (1993), 'Criminal, Penal and Life Histories of Chronic Offende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Early Identification', Criminal

의 대도시연구에서는 동시출생집단의 1%(범죄자의 6%)가 동시출생집단의 등록된 범죄의 절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100] 다른 연구들도 소규모의 범죄자들이 전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상습범들은 그들의 첫 범죄를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저지르고, 가장 심각한 범죄인 강도, 약물범죄, 차량절도 등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상습범들은 다른 범죄자들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욱 심각해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범죄경력으로의 길을 제지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상습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이같은 직업적 범죄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1) 수법(手法)의 전문성(專門性)

직업적 범죄인은 범죄가 직업화한 단계에 속하므로 자기만의 특정한 수법 내지 기술,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다. 즉 생활수단으로서의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절도라는 같은 범죄를 행할 경우에도 직업적 범죄인은 “금고털이”는 금고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으며, “소매치기”는 버스,지하철등에서 소매치기만을 “아리랑치기”는 술취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한 가지 수법만을 전문적으로 계속하는 경향을 갖는다. 아베(安倍)는 범죄심도(犯罪深度)(범죄자의 생활공간이 일정한 범죄에 관련되어 가는 심도)를 4단계로 유형화하여 범죄가 초보적 아마추어단계에서 직업적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ehavior and Mental Health, 3: 492-523.

100) Wikstrom, P.-O. H. (1987), Patterns of Crime in a irth Cohort, Research Report No 24, Project Metropolitan, Department of Sociology: Stockholm University.

<표 Ⅴ-1> 범죄심도의 4단계

단 계	내 용
제1단계	·범죄심도 : 초보적 단계로 범죄와 생계유지와는 무관하며 피해자는 주로 주위의 사람이 된다.
제2단계	·범죄심도 : 준 아마추어(semi-amateur)단계로 범죄는 기본적으로 '놀이'이며 '벌이'는 아니다.
제3단계	·범죄심도 : 준 직업적(semi -professional)단계로 직업적인 범죄자와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집단에 대하여 소속감까지도 가지며 수법의 전문화가 발전하여 전통적 수법이 학습되고 범죄는 "놀이"가 아닌 "벌이"로서 생각하게 된다.
제4단계	·범죄심도 : 직업적(professional)단계로 범죄가 직업화(職業化)하여 수법이 전문화하는 단계이다. 명확한 직업적 전망과 직업적 자긍심을 갖게 된다.[101]

한편, 아래의 나타난 사례들은 제 4단계의 범죄심도에 도달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례15】

아래는 경찰수사 전산망에 수배된 노인의 수법의 내용이다. 일명 '늙은 여우수법'으로서 찜질방 등에서 전문적으로 지갑을 절취한 후 다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다중의 수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60대 초반 남자, 키 160센티가량, 뚱뚱한체격에 대머리, 양복에 넥타이 착용한 노인이 2003.12월-2004. 5월 사이에 서울시내 찜질방에 들어가 심야시간대에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깊은 잠에 취해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손목 또는 발목에 걸고 있는 옷장 열쇠를 슬쩍해서 옷장 문을 열고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특히 에세 또는 던힐 : 에세 애연가로 추정)를 수십 보루씩 구입하는 등 훔친 피해자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의 물건을 구입하는 수법을 사용함.

【사례16】 공항서 핸드백 상습절도 70대 노인

2006년 인천공항에서 핸드백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70대 노인을 검거하게 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01) 이상현, 「범죄심리학」(서울; 박영사 2004) 제1편 제4장 범죄형성과정의 심리.

혼잡한 시간대에 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손가방을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국 인파로 붐비는 인천공항 항공권 발매소 앞에서 항공권을 받느라 짐수레나 카운터에 가방을 잠시 올려 둔 여행객이 범행대상이었다. 범행수법은 한 남자가 여행객 짐수레 근처를 빙빙 돌더니 핸드백을 슬쩍 집어들고 사라지는 것으로 범행이 종료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이모씨(72세, 남)는 공항이 가장 붐비는 오전 7시 전후를 범행을 실행할 시기로 정하였다. 절도 전과 17범인 이 씨는 최근 열흘 동안 여섯 차례, 모두 3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102]

절도 전과 17범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이 노인에게 있어 절도 범죄는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한 본인만의 병리적 메커니즘에서 기인한 범행이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장기간의 절도범죄의 실행과 수사기관의 검거, 이후의 수감생활 이후 반복된 절도 범죄의 실행은 이미 생애를 통한 만성적인 생활패턴으로 고착화 되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범죄(犯罪)의 체계성(體系性)

직업적 범죄자의 범죄는 체계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어떤 범죄를 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체계적'이라는 용어는 '정신병질적' 또는 '비체계적' 이란 용어와 대비되는 단어로서 범죄가 무질서한 성격이 아니라 의도된 질서를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범죄현장이 우발적 충동적 성향을 보인다면 그것은 범죄자가 직업적 범죄자는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직업적 범죄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의미이다.[103]

【사례17】 건설회사 사장 노릇 노인 사기단

건설업체 사장 행세를 하며 조직적으로 부녀자에게 접근, 금품을 가로채거나 훔친 박모

102) SBS TV, 2006년 12월 25일.
103) 로버트 K. 레슬러 톰 샤흐트만, FBI 심리분석관, 황보석 역(서울; 미래사,1994), p.140.

씨(70) 등 60-70대 노인 사기단 3명은 지난달 13일께 주부 하모씨(47.여)에게 "건설회사 사장인데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접근해 하씨의 환심을 산 뒤, 같은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하씨의 집에서 장난삼아 도박판을 벌여놓고 수표를 교환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하씨가 준비한 현금 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화투도박을 하는 3일여 동안 하씨에게 방값과 심부름값으로 수십만원을 주면서 환심을 샀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3) 범죄원인의 내부성

직업적 범죄자는 또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반복적 경향을 필연적으로 갖는다. 그런 범행 반복의 원인이 외부적 자극에 의한 경우가 적고, 내부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행위자의 우월성, 조폭성, 주벽성, 음욕성 등이다[104].

그러면서도 그들은 범죄의 원인이 자신이 내부적, 기질적인 것이 아닌 외부적인 환경, 가족관계(부모의 이혼, 사별), 친구관계(나쁜 친구의 유혹), 사회 환경(학벌부족, 전과자 무시) 등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105]

또한 그들은 범죄행동학습을 통하여 습관화하여 정형화된 수법이 있어서 처음으로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이나 실패감이나 위험감을 수반함이 없이 차례차례로 범죄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고통없이 깨져버린다.[106] 아베가 말한 것처럼 직업적 자긍심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사례17】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강간 노인

최0식(33.1.2)은 성폭력등 전과 12범으로서 2003. 9. 27. 14:30경 경남 고성읍 서외리 대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 3명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며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시켜 반항하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 및 강간한 것이다.

---

104) 이상현(2000),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p.37
105) 신석환(2006) 범죄의 특수한 유형과 동향, 경성법학 제15집 제1호 연구논문, p.245
106) 이상현(2000), 상게논문, p.50

【사례18】 중국소녀 입양, 2년간 강간한 70대 노인[107]

손녀뻘인 열두살 중국동포 소녀를 입양해 2년여 동안 140여차례나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또다른 10대 소녀 2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입양한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편모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2000년 9월 하순부터 2002년 11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서울 상도3동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중국동포 ㅈ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편씨는 2000년 9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당시 열두살이던 ㅈ양을 소개받아 한국에 데려왔다. 그러나 중국 투먼에서 어머니(48) 및 언니(20)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왔던 ㅈ양은 편씨의 손에 이끌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성노리개' 신세가 됐다.

ㅈ양보다 6개월 앞서 2000년 3월 입국한 ㅈ양의 어머니는 서울 대림동에 따로 거처를 얻고 나이트클럽 주방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딸이 당하는 수모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0월쯤 딸이 있는 편씨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됐고 그제서야 편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편0순은 폭력행위등 전과7범

4) 범죄개시의 연소성(年少性)

직업적 범죄자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매우 어린 나이에 범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연령에 맞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108]

Moffitt(1993)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한 집단은 평생지속형(Life Course Persistent Type)이고 다른 한 집단은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ts

107) 경향신문 2005-01-26

108) 양계민, 김의철(2003)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vol. 22 p.64

Limited Type)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어린 시절의 범행이 평생지속되는 집단이고 후자는 발달특성상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르다가 성인이 되면 범죄를 그만두게 되는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이 그룹의 범죄자들의 부류는 신경학적인 기능이나 사회화에 실패하지 않은 대신, 그들의 범죄는 동료사회 접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Moffitt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성숙함의 지위를 추구하지만 어른사회의 지위는 더 나중의 나이에서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도의 차이는 어른에 도달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들이 이러한 성숙도의 차이에 빠져듦으로서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같은 문제를 경험한 다른 청소년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동료 사회 접촉은 성숙도의 차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모방하게 된다. 어른 사회지위를 상징하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성적 행위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에는 대부분의 청소년기제한형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바래왔던 어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과거 비행행위에 속했던 행위들을 줄이기 시작한다. 반면 Moffitt(1993)는 평생지속형(Life Course Persistent Type)이 발생되는 원인을 유전적 요인이나 신경학적 결함으로 보았다. 이런 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인지적 발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되고 자기통제의 어려움, 욕구 지연능력의 부족, 갈들의 물리적 해결경향성을 갖게 되어 만성적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다.[109] 또한 비행행동이 일찍 시작될 수록 만성적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Kempf-Leonard, Tracy, and Howell(2001) 들은 1958년 출생의 표본집단의 검사를 통해 이른 나이에 구속된 범법자들은 성인기까지도 계속 구속을 당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례19】 인천공항 8억원 보석 절도 용의자는 할아버지들[110]

인천공항에서 8억원대의 보석가방을 훔쳐간 용의자들은 전과 10범의 70대와 60대 노인 2명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공항경찰대는 7일 용의자 구모씨(71)와 이모씨(67)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류 1만5100여점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

109) Ibid p.66
110) 노컷뉴스 2005년 11월 8일

석도매상 김모씨의 보석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TV에 찍힌 용의자들과 동일수법 전과자 30여명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인 뒤 장물 처리를 준비하는 이들을 이날 저녁 검거했다.[111]

5) 범죄의 공범성(共犯性)

직업적 범죄자는 단독범인 경우가 드물다. 도꾸다이(1-2명이 하는 단독 소매치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소매치기 일당의 경우 망을 보는 '안테나',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는 '바람막이' 등등 대개 4-7명의 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보통이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조직을 이루어 범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범죄수행과정에서만 공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범행후의 처리에서도 다수의 범죄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절도의 경우에는 차를 훔치는 자, 차를 해체·조립·도장하는 자, 차를 운반하는 자, 차를 주문 및 판매하는 자 등에 의하여 범죄조직이 구성되는 것이다.[112] 특히 오늘날 같이 기동력이 필요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이런 공범성이 강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사례들에서 노인들이 공범으로 사기행위를 하였고 앞선 사례에서 노인들은 각각 절취행위의 실행자와 망을 보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습적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범죄이면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 합법적인 사업체를 통한 범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폭력의 행사와 같은 부분은 조직원 중에서 나이가 비교적 젊은 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위치는 다수가 범죄전과를 가진 자들로 생활자체가 범죄로 영위될 정도의 불법적인 경제활동 및 법익침해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행해 온 직업적 범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11) 위사건의 용의자 구0헌(34.4.25)는 24세 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이0창(38.6.26)은 28세에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서0시(40.11.2)는 20세에 특수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을 각각 처음으로선고받은 바 있다.

112) 이상현(2000),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p.50

특히 이와 같은 모습은 상습적인 조직범죄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 상습적인 조직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적인 구성원들과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는 그들안에서의 엄정한 규율과 역할 등은 개인적 개별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으며, 조직원들에게서 공통적인 소질론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폭력서클에서의 활동 경험, 조직폭력에 대한 동경은 가담하고 싶은 욕구는 이미 성장과정에서부터 직업적이고 만성적인 조직범죄의 특징을 학습하고 경험한 장기간에 걸친 소질의 배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성장환경과 가정환경 또는 또래집단에서의 경험과 인지, 소속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등의 욕구의 해소 등으로 특정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지 못할 우려가 높다. 또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는 또래집단과 학교생활과 환경이 주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학업에 대한 성취의욕의 저하 그에 따른 소외감 등에 기인한 최초에는 우발적이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험들이 만성적인 직업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성장환경과 생활환경을 통하여 학습하고 자행되는 이러한 조직범죄의 유형은 결국 만성적인 개인의 특질로 고착화되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조직내에서의 위치의 변화, 경험자로서의 역할모델 정립 등의 직업적, 생애적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직범죄단체의 관리자급의 구성원들은 생애를 걸쳐 경험한 조직범죄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해 점차 만성화 된 채 새로운 아이템이 구상이나 조직범죄단체의 이권에 관련한 같은 세대간의 네트워크, 형사사법기관의 통제의 기준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편법의 개발 등 조직 내에서의 주도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6) 개별적 특징

직업적 범죄자의 가장 많은 유형은 절도이다. 재범수형자중 가장 많은 것은 절도로 전체의 46%나 차지한다. 절도를 반복하는 것은 강력범죄를 범하면 형이 무거워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상습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형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절도나 장물에 관련되는 범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113)]

(1) 절 도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도 조세형은 만성적 직업범죄자로서의 생애형범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대도 조세형은 전과 13범의 절도범죄자이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만성적 직업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몇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전쟁 고아였던 조세형은 소년원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들어가게 되었고, 전과 13범이라는 생애적 범죄인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조세형의 첫 전과기록은 63년 10월 특수절도 혐의였다.

1970년대까지 모두 10차례나 상습절도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조씨는 70년대 말부터 경찰에 검거된 1982년 11월까지 드라이버 한 개로 부유층과 고위권력층 저택만을 털어 총 수십억 원대의 보석과 현금, 기업어음 등을 절도했다. 특히 그는 훔친 물건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현대판 의적' 행세를 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으며, 당시 그가 훔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화제였으며, 피해자 중에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 등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형사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받고 구치소로 넘겨지기 직전 수갑이 묶인 채로 환기통을 뚫고 탈주해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5일만에 그는 경찰관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다시 붙잡혀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몸에 밴 도벽은 끊을 수 없었다. 이듬 해 11월 일본 선교를 위해 방일 중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고급시계 라디오 여자속옷 등을 훔치다 일본 경찰관에게 총에 맞고 체포돼 3년 6개월 동안 일본 고부 형무소에서 복역[114]한 이 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자숙의 의미로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면서 종교생활과 노인 봉사활동을 펼치다 최근 서울의 치과의사의 집에서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사례이다.[115]

일반적으로 절도 행위를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

113) Ibid p.38
114) 한국일보, 2005년 3월 25일자.
115) 서울 마포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담을 넘은 뒤 집안으로 침입하다가 사설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달아나다 경찰이 쏜 공포탄에 놀라 넘어져 덜미를 잡혔습니다.; YTN TV, 2005년 3월 26일 보도.

로서 간주하는 범죄학적 관점[116]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형의 생애적 절도범죄의 행위자체는 불가피한 행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형이 최근 절도혐의로 구속되어 그의 부인이 면회를 갔을때, 조세형은 그의 아내에게 “뭔가 홀린 듯이 버스를 타고 마포로 갔으며, 어떻게 빈집에 들어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117] 이것은 곧 이성적 판단의 기준을 넘어선 절도행위에 대한 집착과 중독성을 가진 반복적 행위가 낳은 개인적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형의 절도범죄행위의 심리학적 기제는 일종의 충동조절 실패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금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생계형 절도범죄가 아니라 절도를 하고 싶다는 욕망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체적 긴장감의 지속과 충동적 범행의 실행에 이은 긴장의 이완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 성범죄

노인층이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은 배우자의 사별과 노년기에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신체질환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에 스스로의 건장함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 회복의 왜곡된 심리적 메커니즘의 실현을 기대하기도 한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사별 노인의 우울증은 여성, 나이가 젊고, 사별기간이 길수록 증가한다[118]고 하였는데, 이는 곧 독거노인층의 비행행동으로 연결되며, 생활반경 내에서의 일상적이고 시도가 용이한 아동상대 성범죄로 실행할 우려가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은 생물학적, 유전학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생활패턴에서의 반응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9] 더욱이 젊은 성년층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층의 우울증은 50%에서 만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120] 따라서 불안, 초초, 무기력, 수면장애, 식욕 감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체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의 상실로 이어져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으로 표출되어 성인여성에 비해 통제가 용이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116)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서울: 북카페, 2007), p. 379.
117) 레이디경향, 2007년 2월 14일.
118) 이승환 · 정영조, “노인 우울증”, 仁濟醫學 제23권 제2호 (2002. 6), p. 381.
119) 이승환 · 정영조, 상게서, p. 380.
120) 이승환 · 정영조, 상게서. p. 380.

수 있는 것이다.

(3) 마 약

마약류 범죄는 복용이후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습적인 복용으로 이어지기에 상습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노인층의 범죄유형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으로 말미암아 생애에 걸쳐 마약류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인층의 마약류 범죄는 그들이 성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남용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스스로의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및 공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직업적인 맥락에서 마약류의 제조, 유통, 공급에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기에 상습적이고 직업적인 생애지속형 범죄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인마약사범은 대체로 재범자나 돈을 벌기 위한 판매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약 수사관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제조책들은 거의 60대 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으며,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후, 일본의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필로폰 제조기술을 배워와 한국에 유통시켰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노인이 된 경우라고 했다. 한편 이와대비되는 사례로서는 노인들이 마약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병통치약으로 오인하거나 꽃이 예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Ⅵ.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1. 생계형 노인범죄의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노인들의 범죄 중 재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중 배임범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비율을 노인이 점하고 있으며, 범죄의 원인 중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범죄를 행하는 비율이 24.8%나 되므로 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선 가족보호 후 사회보장'으로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살려서 노인복지의 기본으로 삼으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친 사상의 장점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제도에 의한 노인부양과 경로효친의 가치관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가족의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부와 미성년의 자녀들로 구성된 현대의 핵가족이 전통적인 '집'의 의식과 '가족'의 의식 및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을 약화시키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전통적인 보호제공자였던 여성의 역할 변화, 주택의 부족 및 동거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부족 등의 현실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적 가치와 현실적 상황사이의 차이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실적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소득보장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도 크게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노인문제의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121)122)].

한편,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연금 제도의 활성화

(1) 공적연금제도의 확대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험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령, 퇴직,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퇴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에 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등이 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전체의 연대성에 의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노령세대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이 있다. 아울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종신연금의 형태로서 그 가입이 강제적이다[123].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으로 첫째,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연금 보험료의 납부실적에만 근거할 수 없다. 연금급여의 수준이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근거할 경우 고소득층은 높은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계를 위한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

121) 김학영,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72~76 참조.

122) 홍백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57권, 2005, 26~31 쪽 참조.

123)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 1995, pp. 49~54 참조.

둘째,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상실해 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창출을 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층은 수혜 대상으로 적합 치 않다.

셋째,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연금가입자에게 후일 제공될 연금급여는 사전적으로 결정되고 알려져 가입자들이 노후생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위험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생계능력의 상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연금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될 연금급여의 수준이 불확실 해 연금급여로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연금제도는 보험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는 장래에 발생하게 되는 물가상승으로부터 연금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졌더라도 예상 밖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수혜자들의 연금급여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면 연금제도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는 물가연동(price indexation)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민간 연금보험은 물가연동제를 통해 노년층의 생계를 물가상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보험 수리적으로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빈번한 물가변동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생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 노동계층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가진 젊은 세대는 몇십년 후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 대해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내일의 소비보다 오늘의 소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저축이 노후생계를 위해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이런 근시안적인 젊은 세대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생활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첫째)과 노후생계를 보장이라는 보험기능(두번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한 대로 공적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과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보험기능을 현실의 공적연

금제도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많은 나라에서 공적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계층간 재분배의 효과를 다소 가지고는 있으나 부유층 연금수혜자들은 많은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연금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의 <표 Ⅵ-1>에서 나타나는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124]을 살펴보면 2005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총 737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8%만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매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행의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연금급여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생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해 연금급여의 조건과 수준을 변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연금수혜자들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던 젊었던 시절 정부가 약속했던 연금급여를 노후에 받을 수 없게 되어 노후에 발생하는 생계위협이라는 위험을 제거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125] 더욱이 물가상승으로부터 노년층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 충분한 물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근시안적인 젊은 세대들의 노후생계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공적연금제도가 중도에서 붕괴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은 노인계층 인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

---

124)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www.nso.go.kr) 참조.

125) 김승용,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년학회, 2000, pp. 21~24.

<표 Ⅵ-1>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합 계	노령연금 (퇴직, 퇴역연금)	장애연금 (장해, 상이연금)	유족연금	연금 수급률1)
2004	581,928	519,079	3,018	59,831	13.9
	(100.0)	(89.2)	(0.5)	(10.3)	
국 민 연 금	458,419	412,682	2,680	43,057	11.0
공 무 원 연 금	83,658	75,373	313	7,972	2.0
사 학 연 금	8,877	8,232	6	639	0.2
군 인 연 금	30,974	22,792	19	8,163	0.7
2005	737,176	659,220	3,926	74,030	16.8
	(100.0)	(89.4)	(0.5)	(10.0)	
국 민 연 금	600,421	541,990	3,532	54,899	13.7
공 무 원 연 금	93,468	83,674	372	9,422	2.1
사 학 연 금	10,298	9,526	n.a2)	772	0.2
군 인 연 금	32,989	24,030	22	8,937	0.8

※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 연금 팀
※ 주 : 1) 각 연금 수급자의 합계/65세 이상 추계인구
2) 자료 없음(not available)

(2) 국민 연금 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중 하나이다.[126]

사회보장제도는 산업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세계 각 나라에서 채택되어 온 것으로서 산업사회 이전에는 가족, 친척, 지역사회 등의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지원되던 노령, 빈곤, 질병, 장애, 사망 등의 문제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 제도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시대변화에 민감한 역사적 산물로서 각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 사회체계, 사회가치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화 도시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소득격차에 따른 빈곤 문제의 심화, 임금 노동자의 증대로

126) http://www.nps.or.kr(국민연금관리공단).

인한 산업재해,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의 증대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집단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과제를 각각 공통적으로 안게 되었다.[127]

한편,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 또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사회적 장치이다. 즉, 공적연금과 같이 노인 인구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2) 생활 보호제도의 확대

생활보호제도는 공적부조방법에 의한 유일한 소득보장제도로서 1960년까지는 일제시대 말기인 1942년에 제정된 조선 구호 령 및 해방 후의 미군정훈령 등에 준하여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확립되었으며, 1997년 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 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적 부조는 친족부양의 우선 원칙과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낮은 급여수준 및 공적 부조를 받아야 할 빈곤 노인층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빈곤노인들의 실생활 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생활보호사업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최후보루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결정된 국가예산 사정에 맞추어 급여수준이 결정되어 최저생계보장에는 미흡하며 대상자 선정 역시 제한적이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생활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령인구의 빈곤화가 더욱 크게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노령인구의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활보호제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시점에 맞지 않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노령인

127) 지광준, □□노인범죄 老人犯罪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회, 2002, pp. 19~21 참조.

구의 생계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노령 수당 및 경로 연금 제도의 적정화

노령수당은 1988년도 1월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서의 노령수당의 지급필요성이 제기되어 1991년부터는 70세 이상의 거택, 시설, 자활보호자에게 매월 1인당 10.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3년에는 65세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금액도 1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였다. 노령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경로연금은 일반적인 사회보험 형태와는 달리 무기연금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비용조달과 같으나 그 지급방법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매년 대상자의 선정절차 없이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 방법과 다르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0세 이상 월 50.000원을 65세 이상 79세 미만은 월45.000원을 지급하며, 소득기준 1인당 486.000원 이하의 저소득 자에게는 전액 지급자는 월35.000원을 감액 지급자에게는 월26.250원을 지급하고 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급하나 저소득 노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3년 현재 경로연금 지원 대상자는 650.000명으로 214.500.000.000원이 국고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이 현실적으로 소득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로연금지급액이 최고 50.000원에서 최저 15.000원에 불과하여 노후 생활보장은 일상적인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128] 따라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경로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수준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4) 취업 알선 및 고령자 고용촉진

노인취업알선은 은퇴한 노인들의 취업을 도와 소득보장과 아울러 고독과 소외의식을 감소시켜 삶의 보람과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취업알선을 위하여 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이 활동하고 있다.[129]

특히 취업알선센터는 1981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능력은행으로 시작되어, 1997년 1월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지원 하에 대한노인회의 시지부 등에 70개의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 취업확대에 대한 관내기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통한 일감 확보방안을 강구하며,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130]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 3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 있는 노후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며 공업단지 또는 생산업체와의 연계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 및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노인들이 직접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작업대, 칸막이, 옷장, 작업복 등 부대시설 설치중

128) 심재국, “한국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53~58.
129) 이종원,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pp. 84~91 참조.
130)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사회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2003, pp. 56~61.

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양질의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작업내용의 다양화 미흡,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부족, 정부 재정지원규모의 미흡 등으로 참여노인이 저조하며 일거리의 지속적 공급의 미흡과 낮은 단가로 노인의 실제적인 소득보장 강화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은 2001년 6월 8일부터 실시되어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퇴직자도 참가시켜 지역단위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노인과 고령층 대상의 재취업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위해 자활후견기관 지원 사업 형태로 운영하되 종교·직능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된 사회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고 인력의 분배를 위해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적응훈련 실시와 고령자고용관리 지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설치와 인재은행 지정, 그리고 고령자기준 고용율 제도와 고용지원금 지급, 정년연장지도와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과 이 직종에 관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우선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령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자,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자로 정하고 있다[131].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규정들이 대부분 임의적인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 의무조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아래의 <표 Ⅵ-2>와 같다.

131) 김영문, "중고령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 안전망", 사회법연구 제6호, 2006, pp. 29~33 참조.

<표 Ⅵ-2>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132)]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04예산	'05예산 (A)	'06 예산안	
			요구	검토(B)
① 노인일자리 사업	14,273	20,048	39,178	40,568
②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483	5,780	6,123	6,123
③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원	3,102	42	42	42
④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2,480	3,300	3,800	1,733
(일반회계)	992	989	1,600	1,324
(농특)	248	330	500	409
(국민연금)	1,240	1,981	1,700	-
⑤ 직능시니어 클럽운영지원(신규)		-	210	-
합 계	20,338	29,170	49,353	48,46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사업 예산은 노인 일자리 사업, 대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지원, 노인인력운영센터(현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지원,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으로 2006년도 총 예산은 약 485억이다. 이외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404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에 대한 인건비, 교육 및 부대비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지원은 2005년부터 시니어 클럽 운영비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2006년부터 직능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지원형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도별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검토 및 국고보조율 규정(서울30%, 지방50%)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133)]

그런데, 이와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노인들이 범죄로 빠져드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다.[134)]

하지만, 노인은 그 특성상 일반인과는 다른 특징적인 면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노인취업알선을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노인의 취업알선과정과 교육과정, 취업

132)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13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6.
134)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노인취업우수사례집□□, 2005, pp. 67~95.

후 적응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구인처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를 연결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며, 구인 및 구직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노인에 맞는 근무조건의 조절과 새로운 노인적응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훈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2.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1) 소외감과 고립감의 해소

노인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원인들 중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범죄행위로서 보상받으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장소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시설부족과 홍보의 미흡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노인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범죄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행하는 범죄가 아니라 모든 노인이 범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평소 노인들의 심성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이다.[135]

특히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행하는 노인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행하는 노인대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레크레이션은 집단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요청

135) 고양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의 역할”,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1998, pp. 75~81 참조.

된다.[136]

2) 여가활동을 통한 역할상실의 회복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삶을 일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삶을 즐기고 음미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동의 가치가 여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여가경험이 부족하며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도 않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술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노동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배제되고 있으며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 속에서 원치 않는 계속되는 여가(full-time leisure)로 고통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노인의 고독감, 고립감, 심리적 위축감을 증대시켜 노인 스스로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는 자녀들의 출가, 퇴직 및 배우자와 주변인들과의 사별 등으로 인해 역할 상실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137]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전문가의 배치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비롯하여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 프로그램보다는 TV시청, 라디오 청취, 바둑·장기·화투 등과 같이 단순한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아 여가활동이 다

136) 김은원 · 이인정 · 주애란,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건강노화노력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20호 2003, pp. 37~39.

137) 서은숙, “노인여가 활용실태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pp. 28~31 참조.

양하지 못하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한 취미활동, 건강 활동, 교육활동 등을 기반으로 노인의 수준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적으로 적절히 안배하며, 여가활동을 실시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비하여 사회복지사가 노인집단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138] 따라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확충하여 모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상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노인 사회참여의 확대

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는 자율적인 문화생산과 재생산이 가능해지고 노인들이 비공식집단에 대한 관계를 밀접히 하므로 인해 감정적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줄이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인생활의 안정감과 삶의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가장 훌륭한 분야는 자원봉사일 것이다.

자원봉사는 노인들에게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거리 제공과 함께 노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자원봉사 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유용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39] 또한 노인자원봉사를 유급노동으로 보아 실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노인이 빈곤 해결을 위한 취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도록 하고, 노인자원봉사 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하고 노인자원봉사자를 독려하고 보호·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38) 정경희, “고령화사회의 노인보건·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천년민주당 정책 세미나, 2003, pp. 19~23.

139) 조성남, □□고령화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 집문당, 1998, pp. 66~71 참조.

3.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경찰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적용 및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들은 사회의 여타 구성원들에 비해 그들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차원에서도 그들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노인들은 주요 대상으로 하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의 강화이다.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효율성의 의문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순찰이나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단순히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억제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개별적 범죄유형이나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기타 범죄 관련 요인들의 근본적 원인들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를 최소화하면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는 기본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140]

한편, 이와 같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흔히 'SARA'모델로 불리워지는 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 등의 4단계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중에서 먼저 조사단계는 경찰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쟁점사항, 관심사 등을 인식하는 활동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할 수 있는 분석단계는 인지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람과 기관들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경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분석을 하는 과정이다. 또한 대응과정은 경찰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며, 평가는 SARA모델의 전 과정에 환류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입방안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이다.[141]

---

140) BRAGA et al. (1989), "Problem-Oriented Policing, Deterrence, and Youth Violence: An Evaluation of Boston's Operation Ceasefir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8 2001; vol. 38: pp. 196-197.

(2) 노인범죄에의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범죄는 일반적 범죄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노인범죄의 특성에 따라 검거와 처벌만을 강조하는 방안이 아닌 노인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의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노인 폭력범죄는 체력적 취약성으로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음주 이후 발생하는 친구지간이나 가정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해당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노인에게 폭력을 야기하는 문제의 범위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에 알맞은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지능사범의 특색은 횡령이나 배임은 적고 대부분 사기사건인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것은 노인 지능범죄가 소액의 사기사건에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노인 사기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제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입장에서 조사단계에서 '문제(Problem)'라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단계에서는 과거의 범죄기록이나 주변인들로부터 특정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노인의 사기습성이나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단계에서는 노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와 유사한 노인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축적해 놓아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절도는 절도 전과자에 의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이는 절도의 습벽으로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갈취, 소매치기를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도소를 가기 위해 자의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나 자식 혹은 주변사람에게 주목 받고 싶어 벌인 범죄와 치매 등 정신이상으로 벌이는 범행도 있었다.

---

141) Rojek(2003), "A Decade of Excellence in Problem-Oriented Policing: Characteristics of the Goldstein Award Winners", *Police Quarterly*, 12 2003; vol. 6: pp. 494-495.

이것은 노인절도의 경우는 특정한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야기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절도의 근본적 동기와 원인에 알맞은 맞춤형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준다. 특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근거하여 조사와 분석단계에 해당하는 철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개별적 해결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습절도범의 경우 과거의 범죄기록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절도의 습벽을 치료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생계형 절도의 경우는 근본적 범인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강도의 경우는 도박 등의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교정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노인범죄의 대응과 관련하여 형사사법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으로는 조직으로는 교정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정기관에서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노인 수형자에 대한 기초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분석

기존의 대부분 수형자 관련 연구는 젊은 수형자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그 때문에 최근까지도 노인 수형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노인 수형자들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과 범죄관련 특성, 수형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노인 교정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인 수형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인수형자들이 많이

앓는 명의 유형과 그 병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현재의 교정 시설 내 의료체계 내에서 노인 수형자의 진료상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노인수형자의 기능수준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지하여 노인수형자의 질병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의료비용과 기타비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교정당국에게는 노인 수형자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 교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노인 수형자 연령개념의 통일적 확립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노인 수형자의 연령기준을 50세 혹은 55세로 낮추고 일찍부터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정예산을 줄이고 이 비용을 노인수형자가 될 위험성이 큰 젊은 수형자들을 재활하는데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을 규정하는 공통된 연령을 만들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의 전문화

노인은 실제로 특수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는 수형자 집단이므로 범죄경력이나 범죄경향, 의학적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분류하여 수용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처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교정의 단계별, 개별적 처우의 견지에서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수형자들은 노인초범, 노인누범, 노인 장기복역수의 각 유형에 따라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범죄특성, 수형 생활 적응양태, 가족, 건강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초범 수/2범 이상소 구분을 보다 엄밀하게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재활전략을 차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당국의 개별처우 및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노인의 경우 더위와 추위에 의해서도 쉽게 질병에 감염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냉난방에 신경 써야 하며 겨울에 보온물통을 지급하는 현재보다 완화적용하고 매트리스 등의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의 밝기, 인공 장애물 제거 등의 세심

한 배려도 필요하다.

특히 노인수형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처우는 의료적 처우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형자가 고통 받고 있는 부분도 의료적 서비스 부분이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이들의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보조해 주어야한다. 또한 외부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무료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진료횟수를 대폭 늘려 노인수형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청기나 안경 등의 보정기구를 노인수형자에게 대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의 도입이 빨리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현재 교정 복지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 젊은 수형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노인수형자에게 부적합한 프로그램이 많다(신체적인 활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 운동프로그램). 또한 거의 대부분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교도 작업 프로그램 등은 현실적으로 출소후 재취업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노인수형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5) 노인수형자를 위한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노인수형자의 대부분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나 보호관계 조정이 시간이 걸리고 출소 후의 생활설계가 막연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되지 못하고 만기출소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재범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노인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기 전 노인수형자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한다.

(6)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

노령 층에 접어들어 수용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리적, 육체적인 영향이 더 크게 되고 친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정기관과 갱생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과의 제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수형자의 사회 재적응의 첫 단계로 갱생보호기관을 확충, 활용할 필요도 있다.

Ⅶ. 결 어

1. 노인의 의미

노인의 범죄란 노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범죄의 종류가 아니며 법적인 개념도 아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서는 61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연령에 포함시킨다. 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서는 61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현행 국내법상 노인의 연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老人福祉法의 양로시설 입소, 건강진단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처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형법령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5조의 수용급에는 노인에 대한 분류급은 없으나 70세 이상을 노인 수용자로 보는 태도를 지닌다.[142] 본 연구에서는 61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범죄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범죄'란 노인이 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노인의 의미는 역연령(曆年齡)을 기준으로 한 노인이다. 따라서 노인범죄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 및 특별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징

노인범죄의 두드러진 특성은 범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다는 것으로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범죄행위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143] 노령화로 인한 노인의 생물학적 변화는 신체적 힘이나 민첩성이 떨어뜨리고, 또한 호르몬 중 공격성을 유발하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듦으로써 범

142) 천정환, □□신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193쪽 참조.
1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1995, 29~31쪽 참조

죄행위가 줄어든다고 본다.

사회,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인성이 연령에 따라 도덕적 발달과 더불어 성숙해지고, 또한 자극적인 일에 덜 관심을 갖게 되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줄어든다고 보기도 한다. 사회,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결혼과 취업 등을 통하여 가족이나 직장으로부터 순응성을 강화시키게 되어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밖에 낮은 노인범죄율을 코호트효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즉 노인이 젊은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범죄성을 억제하는 가치들, 즉 사회규범에의 동조에 더 중요성을 둔 사회화를 경험한 세대들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는 위의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의 특정 요인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위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범죄행위를 감소시킨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징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이후의 내용과 같다. 노인의 폭력범죄는 체력적 취약성으로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친구지간이나 가정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소한일로 화를 잘 내고 가족 간에도 오랫동안 나쁜 감정이 쌓여 음주 후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지능사범의 특색은 횡령이나 배임은 적고 대부분 사기사건이다.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절도는 절도 전과자에 의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이는 절도의 습벽으로 재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순발력 및 시력 저하, 운동 신경저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노인들은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갈취, 소매치기를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도소를 가기 위해 자의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자식 혹은 주변사람에게 주목 받고 싶어 벌인 범죄와 치매 등 정신이상으로 벌이는 범행도 있었다. 그리고 강도의 경우는 도박 등의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경우도 있었다.

3. 고령화 사회와 노인범죄

우리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61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주로 노인복지 향상 등 어떻게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통계를 보면 그들의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바,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여 5배가 증가하였고 그 형태도 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화하고 있다.

1) 사회구조적 설명

61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잦은 경질은 그 단적인 예이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았을 때, 61세 이상의 인구는 대부분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의 급격한 개선은 대부분 60대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전과 달리 40, 50대 중년에 버금갈 만큼 역동적임을 의미한다. 즉, 현재 60대의 무직 인구 증가는 실질적인 실업자의 증가로 여겨져야 한다.

또한, 과거 대가족 시대와 달리 요즘 정년 이후의 노인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친족의 수가 적어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건한 노인 실업자의 증가는 한정된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의 심화로 풀이될 수 있다.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의하면, 특정 그룹이나 지역의 높은 범죄율은 제한된 자원과 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즉, 자원의 한계를 가정했을 때, 증가된 경쟁률은 제한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의 증가로 이어지는 데, 그러한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2) 개인적 수준의 설명

그렇다면 열악해진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과연 모든 잠재적 노인범죄자들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저지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현대 생태학적 범죄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도 일반 적법행위와 같이 개개인 스스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후 효과가 우위에 있을 때 범해지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는 법적 처벌, 수치심, 기타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이 있고 범죄행위로 얻는 효과는 금전, 재미, 명성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가 비용/효과 비교에만 좌우되는 건 아니다. 어떤 행위의 선택은 여러 대안적 행위들을 비교·분석한 후에 이루어진다. 포기되는 대안적 행위들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기회비용이 되는 데, 이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되면 쉽게 한 가지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선택은 다른 대안적 행위들을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적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의 대안행위는 직업이다.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면 구지 범죄행위를 통해 금전적, 심리적 혜택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의 중요성은 비단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훌륭한 사회통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직업 활동을 통해 자기통제, 규율준수, 사회참여, 정서적 연결 등이 향상되는바, 이는 범죄로부터 얻을 수 없는 혜택으로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4. 정책적 함의

이상의 논의에서 추출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명백하다. 바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인구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복지혜택을 늘려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일자리의 창출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이론가들이 설명하듯 직업을 가진 노인인구는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사회 통제력이 증대되어 범죄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중년과 다름없는 바,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도 최소한 60대의 젊은 노인들을 유효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의 생산성 향상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편, 범죄행위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처벌의 증가, 경찰력 증대 등이 가능한 방법인데 이와 같은 대책은 이미 서구에서 효과가 미비함이 증명되어왔다. 특히 처벌의 증가는 민주화, 자유화라는 큰 맥락에서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노인의 문제를 개인을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빗나간 발상이다. 이들을 사회의 주 구성원으로서 이해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의 제공은 생태학적 범죄이론에서 설명하듯 생존경쟁의 완화를 가져오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설명하듯 범죄행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또한 훌륭한 사회통제의 기제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복지혜택의 증가는 일면 경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들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바, 고용확대가 최적의 대안이라 사료된다. 물론 70세 이상 노인인구에게는 복지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적용 및 강화, 교정기관서에서 노인들에 대한 개별처우 및 시설개선 등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Ronald L. Akers and Christine S. Sellers, 기광도 외 5인 공역(2005), □□범죄학이론□□, 나남출판.

경찰청(1996-2005), □□범죄분석□□.

대한노인회 취업센터(2005), □□노인취업우수사례집□□, 서울 보건복지부.

로버트 K. 레슬러 톰 샤흐트만, 황보석 역(1994), □□FBI 심리분석관□□, 미래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6□□ 서울 : 보건복지부, 2006.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서병숙(1995), □□노인연구□□, 교문사.

이건종・전영실(1995),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현(1994), □□범죄심리학□□, 박영사.

이수정(2007), □□최신 범죄심리학□□북카페.

장인현・최성재(199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성남(1999), □□고령화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 집문당.

천정환(2006), □□신범죄심리학□□, 대왕사.

최일섭, 최성재(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장래인구추계□□

2. 연구논문

고양곤(1998),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의 역할”,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사회와 노인 교육.

김승용(2000),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년학회.

김영문(2006), “중고령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 안전망”, 사회법연구 제6호.

김은원・이인정・주애란(2003),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건강노화 노력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20호.

김종오(1997),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김학영(200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은숙(2004), “노인여가 활용실태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조선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신석환(2006), “범죄의 특수한 유형과 동향”, □□경성법학□□제15집 제1호.

심재국(2005), “한국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계민・김의철(2003),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vol. 22.

이건종・전영실(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이상현(2000),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이승환・정영조(2002), “노인 우울증”,□□仁濟醫學□□제23권 제2호.

이종원,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이현희・원영희・구자숙(2003),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제23권 제2호.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제11집.

정경희(2003), “고령화사회의 노인보건·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천년민주당 정책 세미나.

지광준(2002), “노인범죄 老人犯罪의 특성과 그 대책”,한국노년학회.

한국노동연구원(2003), “고령화사회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한국노년학회.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57권.

3. 외국문헌

Akers(1988),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viant Behavior among the Elderly”, Older Offenders: Perspectiv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raeger.

Aultman, M(1979), “Delinquency Causation: A Typological Comparison of Path Model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Bernard, T(1984), “Control Criticisms of Strain Theories: An Assess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dequa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Bishop, D(1984), “Legal and Extralegal Barri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2:403-419

BRAGA et al(1989), “Problem-Oriented Policing, Deterrence, and Youth Violence: An Evaluation of Boston's Operation Ceasefir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8 2001, vol. 38: pp. 196-197.

Breen(1960), “The Aging Individual”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p. 161-163.

Cernkovich, S(1978), “Evaluation Two Models of Delinquency Causation: Structural Theory and Control Theory.” Criminology.

Covey · Menard(1987), “Trends in Arrests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7.

Dull, R(1983) “Friends' Use and Adult Drug and Drinking Behavior: A Further Tes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Elifson, Petersen and Hadaway(1983), “Religiosity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1.

Elliott, D., and D. Huizinga, and S. Ageston(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Newbury Park, CA: Sage.

Elliott, D., and S. Ageton, and R. Cantor(1979), “An Intergrated Theoretical Perspective on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Farrington, D(1979), “Longitudinal Research on Crime and Delinquency” In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1, edited by N. Morris and M. Ton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arrington, D. P, and West, D. J(1993), ‘Criminal, Penal and Life Histories of Chronic Offende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Early Identification’,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3: 492-523.

Fishman(1977), “Crime Wave as Ideology”, Social Problems 25.

Feinberg(1984), “Profile of the Elderly shoplifter” in Elderly Criminals.

Flynn(2000), “Elders as perpetrators” in Elders,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pringer.

Grasmick, H., D. Jacobs, and C. McCollom(1983), “Social Class and Social Control: An Application of Deterrence Theory.” Social Forces.

Guttentag, M(1968), “The Relationship of Unemployment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24.

Goetting, A(1983), “The Elderly in Prision: Issu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

Hawkins, D and J. Weis(1980)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anushek y Jackson(1977), Satistical Method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Academic Press.

Hirschi(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irschi · Gottfredson(1983), op.cit. ; Cohen · Land(1987), “Age Structure and

Crime: Symmetry vs. Asymmetry and the Projection of Crime Rates Through the 199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p. 170-83.

Hirschi · Gottfredson(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p. 552-84.

Hindelang, Hirshi, and Weis(1981), Measuring Delinquency. Newbury Park, CA: Sage.

Johnson, R(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rcher(1987),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rime: The biological vs. Sociological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Montreal, Quebec.

Kercher, K. In Press. "Causes and Correlates of Crime Committed by Elderl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Current Issues in Aging, edited by E. Borgatta and R. Montgomery. Newbury Park, CA: Sage.

Kornhauser, R(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An Apraisal of Analytic Mode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rohn, M. and J. Massey(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pe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Loeber, R. and T. Dishion.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82-90.

Mannheim(1965), Comparative Criminology, Houghton Mifflin: p. 21.

Matsueda. R(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McCarthy, J. and D. Hoge.(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Meier, R. and W. Johnson(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Mernad, S. and B. Morse(1984), "A Structuralist Critique of the IQ-Delinquency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Merton, R(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Minor, W(1977), "A Deterrence Control of Crime, in Theory in Criminology: Contemporary Views, edited by R. Meier. Newsbury Park, CA: Sage

Minor, W. and J. Harry(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90-203.

Neugarten(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p. 187-188.

Paternoster(1983), Farnworth, M. 1984. "Male-Female Differences in Delinquency in a Minority-Group Sample."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Paternoster, R., L. Salzman, T. Chiricos and G. Waldo(1983),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 p.474.

Pestello, H(1984), "Deterrence: A Reconceptualization" Crime and Delinquency.

Pope, H. and M. Ferguson(1982), "Age and Anomia in Middle and Later Life: A Multivariate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of White Men" Internation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Rojek. J(2003), "A Decade of Excellence in Problem-Oriented Policing: Characteristics of the Goldstein Award Winners", Police Quarterly, 12 2003; vol. 6: pp. 494 - 495.

Quetelet(1831), Research on the Propensity to Crime of Different Ages, Hayez: p. 3.

Salzman, R. L., T. Chiricos and G. Waldo(1982), "Perceived Risk and

Deterrence: Methodological Artifacts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Saltzman, L., R. Paternoster, G. Waldo, and T. Chiricos(1982), "Deterrent and Experietal Effects: The Problem of Causal Order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72-189.

Sampson · Laub(1990),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Shichor · Kobrin(1994), "The Extent and Nature of Lawbreaking by the Elderly: A review of arrest statistics" in Elderly Criminal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Publisher's Inc.

Stark, R., L. Kent, and D. Doyle(1982),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Ecology of a 'Lost' Relationship",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Stark, R. and McEnvoy(1970), "Middle-Class Violence" Violence Today 4.

Steffenmeier et al.(1989), "Age and the Distribu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p. 803-31.

Steffensmeier(1987), "The Invention of the "New" Senior Citizen Criminal: Analysis of Crime Trends of Elderly Males and Elderly Females, 1964-1984", Research on Ageing 9(2):

Strickland, D(1982),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 Comment and Critiqu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p.165.

Tittle(1977), Sanction Fear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Social Forces 55.

Tittle, C(1977), Sanction Fear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Social Forces Paternoster.

Tittle, C(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Tittle, C., W. Villemez, and D. Smith(1982)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More on the Class/Criminality Controvers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Tittle, C and W. Villemez(1977),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Social Forces 56.

Thornberry, T. and M. Farnworth(1982), “Social Correlates of Criminal Involvement: Further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and Criminal Behavior.” American Sociologcal Review 47.

Thornberry T. and R. Christenson(1984), “Unemployment and Criminal Involvement: An Investigation of Reciprocal Causal Structures.” American Sociology Review 49.

Weis, J., J. Hall, J. Henney, J. Sederstrom, K. Worsley, and C. Zeiss(1979), Peer Influence and Delinquency: An Evaluation of Theory and Practice, Part I and Part II. National Institute f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iatrowski, M., D. Griswold, and M. Roberts(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25-541

Wikstrom, P.-O. H(1987), Patterns of Crime in a irth Cohort, Research Report No 24, Project Metropolitan, Department of Sociology: Stockholm University.

Wilbanks(1984), “The Elderly Offender: Placing in Problem in Perspective” in Elderly Criminal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Wilbanks · Murphy(1984), “The Elderly Homicide Offender” in Elderly Criminal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4. 언론보도자료

레이디경향, 2007년 2월 14일.

한국일보, 2005년 3월 25일.

SBS TV, 2006년 12월 25일.

YTN TV, 2005년 3월 26일.

5. 인터넷자료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통계청: http://www.nso.go.kr/nso2006/main/index.htmldex.html.

통계청: http://kosis.nso.go.kr.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 www.nso.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s.or.kr.